

디지털 유산에 관한 논의 동향 및 중장기 정책방향 연구

A Study on Mid-to Long-term Policy Measures on
Digital Legacy

2025. 3

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디지털 유산에 관한 논의 동향 및 중장기 정책방향 연구

(A Study on Mid-to Long-term Policy Measures on
Digital Legacy)

김현수/장신재/이선희/이경남

2025. 3

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이 보고서는 2024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정책연구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디지털 유산에 관한 논의 동향 및 중장기 정책방향 연구』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5년 3월

연구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총괄책임자: 김현수 선임연구위원

참여연구원: 장신재 부연구위원

이선희 부연구위원

이경남 부연구위원

목 차

요약문	ix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디지털 유산의 정의	1
제2장 국내외 디지털 유산 논의 현황	10
제1절 주요국 디지털 유산 관련 법·제도 현황	10
1. 미국	10
2. 캐나다	15
3. 독일	18
4. 프랑스	19
5. 중국	21
6. 일본	22
제2절 국내 디지털 유산 관련 입법 시도	24
1. 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안(2010. 7. 12)	29
2. 박대해 의원 대표발의안(2010. 7. 21)	30
3. 김금래 의원 대표발의안(2010. 9. 9)	32
4. 김장실 의원 대표발의안(2013. 5. 22)	34
5. 손인춘 의원 대표발의안(2013. 7. 10)	35
6. 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안(2022. 7. 11)	36
7. 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안(2023. 4. 25)	37
8. 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안(2025. 2. 11)	39
제3절 주요 기업별 디지털 유산 관련 정책	41

1. 해외 주요 기업	41
2. 국내 주요 기업	45
제 3 장 디지털 유산 법제화 논의	55
제 1 절 사업자 및 이용자 의견	55
1. 사업자 의견	55
2. 이용자 의견	61
제 2 절 관련 현행법 검토 및 정책 방안	68
1. 관련 현행법 검토	68
2. 단계별 정책 방안	71
제 4 장 결론 및 시사점	88
제 5 장 정부정책 반영현황	90
참고문헌	92

표 목 차

〈표 1-1〉 디지털 유산 관련 용어의 정의	2
〈표 2-1〉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개정 통일 수탁자 접근법(RUFADAA)」의 주요 내용 ..	11
〈표 2-2〉 디지털 자산에 대한 대리인의 권한 관련 매사추세츠주와 캘리포니아주 내용	13
〈표 2-3〉 디지털 자산 관련 서비스제공자의 역할 관련 매사추세츠주와 캘리포니아주 내용	14
〈표 2-4〉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주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접근법」 주요 조항	16
〈표 2-5〉 프랑스 「디지털 공화국을 위한 법률」의 디지털 유산 관련 내용	20
〈표 2-6〉 중국 「민법」의 자산 및 상속권 관련 내용	22
〈표 2-7〉 일본 소비자보호원의 디지털 유산 간소화 4가지 단계	23
〈표 2-8〉 디지털 유산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및 주요 내용	25
〈표 2-9〉 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안(2010. 7. 12)에 대한 주요 검토 의견	30
〈표 2-10〉 박대해 의원 대표발의안(2010. 7. 21)에 대한 주요 검토 의견	32
〈표 2-11〉 김금래 의원 대표발의안(2010. 9. 9)에 대한 주요 검토 의견	33
〈표 2-12〉 김장실 의원 대표발의안(2013. 5. 22)에 대한 주요 검토 의견	35
〈표 2-13〉 손인춘 의원 대표발의안(2013. 7. 10)에 대한 주요 검토 의견	36
〈표 2-14〉 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안(2022. 7. 11)에 대한 주요 검토 의견	37
〈표 2-15〉 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안(2023. 4. 25)에 대한 주요 검토 의견	38
〈표 2-16〉 KISO의 사망자의 계정 및 게시물 관련 정책	46
〈표 2-17〉 네이버의 디지털 유산 관련 정책	47
〈표 2-18〉 카카오의 디지털 유산 관련 정책	49
〈표 2-19〉 업비트의 상속 업무 처리 정책	54

〈표 3-1〉 디지털 유산 이용자 인식 조사 응답자 특성	62
〈표 3-2〉 디지털 유산 인식 관련 회귀분석 결과	64

그 립 목 차

[그림 2-1] Apple ID의 유산 관리자 지정 과정 예시	41
[그림 2-2] Google의 비활성 계정 관리자 지정 과정 예시	43
[그림 2-3] Facebook 유산 관리자 지정 과정 예시	44
[그림 2-4] 엔씨소프트의 사망자 계정의 명의 이전 절차	51

요 약 문

1. 제 목

디지털 유산에 관한 논의 동향 및 중장기 정책방향 연구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서비스의 일상화로 인해, 개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온라인 공간에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정보가 남게 되는 사회적 현실에 주목한다. 이러한 디지털 유산은 전통적인 상속 개념과 법제도로는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어려우며, 개인정보 보호, 계약상의 권리·의무, 그리고 유족의 상속권 사이에서 법적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특히, 이용자가 생전에 이용했던 이메일, 소셜미디어, 클라우드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 및 각종 계정에 저장된 정보들은 그 자체로 사적이면서도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지닐 수 있으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이에 대한 체계적인 처리 기준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디지털 유산의 개념을 정립하고 관련 쟁점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국내에서의 제도화 필요성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향후 정책적·입법적 방향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장에서는 디지털 유산 개념의 정의와 이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이어서 제2장에서는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의 입법례와 판례, 그리고 국내 국회의 법안 발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의 대응 실태와 인식 격차를 진단하였고, 뒤이어 관련 현행법 검토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정책적 시사점과 향후 법제화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였고, 제5장에서는 본 연구내용의 정부정책 반영현황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였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본 연구는 디지털 유산을 둘러싼 제도적 공백을 분석한 뒤, 국내외 법제도와 기업의 대응현황을 비교 검토하고,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에 대한 정성적·정량적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방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의 디지털 유산 관련 법제도를 분석하였다. 미국은 주별 개법입법을 통해 상속인과 수탁자에게 디지털 유산 접근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되,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여부를 핵심 요건으로 설정하고 있다. 독일은 연방대법원 판례를 통해 디지털 유산을 물리적 재산과 동일하게 간주함으로써 상속 대상임을 명확히 했고, 프랑스는 2016년 디지털공화국법을 통해 이용자의 생전 의사에 따라 디지털 정보의 사후 처리 방식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화하였다. 이들 입법례는 모두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중심 원칙으로 하면서도, 상속인의 접근 권리와 사업자의 책임 한계 간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다음으로 국내에서 2010년대 이후 국회에 발의된 디지털 유산 관련 법안들을 정리하였다. 대부분의 법안은 상속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핵심으로 하며, 디지털 정보의 보존, 제공 요청 절차, 사업자의 협조 의무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과의 충돌 가능성, 사업자 운영 부담 등의 이유로 입법에 이르지 못한 채 폐기되거나 계류 중인 상태다. 이는 입법적 접근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체계 간 조정 및 사회적 공감대 부족이 주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의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디지털 유산 처리 정책도 정리하였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은 이용자 사전 설정을 통해 사망 시 콘텐츠 삭제, 계정 관리 권한 이전 등을 허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추모 계정’ 기능을 통해 가족이나 지정된 대리인이 제한된 접근 권한을 갖도록 하고 있다. 국내 기업의 경우, 이용자 사망 시 유족이 사망사실을 증명하고 정당한 권한을 입증해야만 제한적으로 일부 콘텐츠 열람이나

탈퇴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수탁자 지정 기능은 대부분 도입되어 있지 않다.

다음으로는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 3사 대상 심층인터뷰와 일반 이용자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디지털 유산의 관리자와 수요자 입장을 각각 수렴하였다. 인터뷰 결과, 사업자는 현재 자체적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관리 정책을 통해 이용자 사망시 유족에게 한정적인 범위의 디지털 유산을 전달하고 있었다. 디지털 유산을 상속 대상보다는 ‘개인정보’ 또는 ‘계정 계약의 종료’로 해석하며, 이용자 동의 없는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법적 부담감을 드러냈다. 디지털 유산의 관리와 승계에 있어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인터뷰에 참여한 사업자들 역시 법적 기준이 마련될 경우 그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대체로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다만 이들은 입법 과정에서 각 업종의 특수한 서비스 특성과 운영 현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디지털 유산의 재산적 측면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와 정교한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전 연령대에 걸쳐 디지털 유산에 대한 개념 자체를 들은 경험이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유산 수탁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가까운 가족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대체로 타당하게 여기며 그다음으로 이용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존재하였다. 디지털 유산의 원활한 상속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별도의 법률이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질문한 결과, 응답자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한편, 디지털 유산 문제에 있어 기업 자율에 맡기기보다는 일정 수준 공적 규율을 기대하면서도, 동시에 각 서비스 특성에 부합하는 개별 대응의 중요성도 인정하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디지털 유산 승계에 대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먼저 기존 법령인 민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과 디지털 유산의 관계를 검토하였고, 다음으로는 단계별 정책 대안 4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민간 자율에 의존하는 모델은 서비스 제공자의 자체 정책을 존중하되 법적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며, 둘째는 정부가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율 규제를 유도하는 방안이다. 셋째는 표준약관 또는 행정지침 형태로 일부 핵심 요소를 규범화하는 중간 단계적 접근이고, 마지막은 디지털 유산을 별도의 입법으로 규율하는 개별입법 모델이다. 이 네 가지 방안은 실현 가능성, 이용자

권리 보장 수준, 사업자 부담 정도, 기존 제도와와의 정합성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상이한 특성을 지닌다. 이 중 개별입법이 가장 명확하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이를 중심으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위 네 가지 정책 방안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단계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할 수도 있다. 예컨대 단기적으로는 현행 민간자율을 유지하되 협회 및 단체를 중심으로 자율규제 차원의 업계 표준을 만들고, 중기적으로 표준약관으로 확대·정착시킨 뒤, 장기적으로 개별입법을 제정하는 로드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방식이든 디지털 유산 상속에 대한 기본 원칙을 확립하고, 고인과 유족,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환경을 마련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적·법적·사회적 관점의 통합적인 접근과 이해관계자 간의 섬세한 이익형량이 요구된다.

5. 정책적 활용 내용

본 연구는 2025년도에 발의된 세 건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46, 2209252, 2209604)의 방송통신위원회 검토의견 작성에 참고자료로 사용되었다. 세 발의안은 공통적으로 디지털 유산의 승계 및 관리에 관한 제도의 미비와 디지털 유산의 특수성으로 인해 기존 상속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현황을 지적하며, 정보통신망법 내 법령 신설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식별한 디지털 유산 승계 및 관리 제도의 핵심 항목(디지털 유산의 정의 및 범위, 수탁자의 지정방식 및 권한, 기존 법률과의 충돌여부, 이용자의 생전 의사 표명 권한 보장 여부, 사업자의 역할)과 주요국 입법례와 단계별 입법안 분석은 위 세 발의안에 대한 검토에 활용되었다.

6. 기대효과

연구에서 제안한 정책방안이 실현될 경우, 사망자의 디지털 정보에 대한 유족의 정당한 접근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양자의 권익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 전체의 디지털 공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기반이 되며, 이용자 관점에서는 생전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받는 구조를, 사업자 관점에서는 불확실한 법적 리스크의 완화라는 실질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유산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장기적으로는 온라인 환경에 걸맞은 새로운 데이터 승계 원칙이 합리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SUMMARY

1. Title

A Study on Mid-to Long-term Policy Measures on Digital Legacy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This study highlights the growing societal reality in which various forms of digital information continue to exist in online spaces even after an individual's death, due to the advancement of digital technologies and the widespread use of internet services. These digital legacies are difficult to comprehensively regulate under traditional inheritance frameworks and existing legal systems, as they raise potential legal conflicts between privacy protection, contractual rights and obligations, and the inheritance rights of surviving family members. In particular, data stored in services such as email, social media, cloud platforms, digital content repositories, and various user accounts often possess both private and economic value. However, current legal frameworks lack clear and systematic standards for handling such information posthumously. Against this backdrop,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working definition of digital legacy, examine the associated legal and institutional issues, assess the need and feasibility of systematizing digital legacy governance in Korea, and propose future policy and legislative directions.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The study is composed of five chapters. The first chapter defines the concept of digital legacy and outlines the key issues surrounding it. Chapter Two analyzes legislative cases and judicial precedents from major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France, as well as the history of legislative proposals submitted to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Chapter Three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responses and perception gaps based on in-depth interviews and survey results from domestic internet service providers and users. Building on these findings, it reviews relevant legal frameworks and proposes policy alternatives. Chapter Four discusses the policy implications and the potential for government adoption, while Chapter Five briefly presents how the study's findings have already been reflected in ongoing public policy processes.

4. Research Results

This study examines the institutional gaps surrounding digital legacy and proposes policy directions based on a comparative review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gal systems, corporate practices, and empirical research involving service providers and users. The legal frameworks of major countries—such as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France—reveal that digital legacy is increasingly treated as inheritable property, albeit under varying conditions. The U.S. has enacted state-level laws that emphasize user consent; Germany recognizes digital assets as part of the estate through court rulings; and France has institutionalized users' rights to determine the posthumous handling of their digital data.

In contrast, although several bills concerning digital legacy have been proposed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since the 2010s, none have passed. Most bills focus on granting heirs access to digital data, but concerns over privacy and the operational burden on

service providers have impeded progress. Meanwhile, global platforms like Google and Facebook allow users to set preferences for account management after death, including memorialization features. Korean companies generally offer more limited procedures and lack structured mechanisms for appointing digital legacy managers.

The study also presents findings from in-depth interviews with domestic service providers and surveys with users. While providers currently restrict data access based on internal privacy policies, they broadly acknowledge the need for legal clarity. They advocate for industry-specific flexibility and stress that the financial aspects of digital legacy require distinct legal consideration. On the user side, awareness of the concept remains limited, and the notion of appointing a close family member as a digital legacy custodian is generally accepted. Most users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legal or institutional frameworks for digital legacy governance and recognize the need for a balanced approach that combines public regulation with service-specific customization.

Finally, the study assesses the relationship between existing laws—such as the Civil Cod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and digital legacy, and proposes four policy models: (1) reliance on private autonomy, (2) promotion of voluntary compliance through government guidelines, (3) implementation of standard terms or administrative directives, and (4) enactment of a stand-alone digital legacy law. While each model has distinct advantages and limitations, the study concludes that standalone legislation offers the most comprehensive and sustainable solution. These models are not mutually exclusive; rather, they can be implemented in stages, beginning with voluntary standards and culminating in formal legislation. Ultimately, establishing a clear legal foundation for digital legacy will promote predictability and fairness for all stakeholders—users, heirs, and service providers alike—requiring a carefully balanced, multidisciplinary approach.

5. Policy Suggestions for Practical Use

This study was used as a reference in the preparation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s official review of three amendment bills to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proposed in 2025 (Bill No. 2208046, 2209252, and 2209604). These legislative proposals commonly point out the inadequacy of existing legal provisions for the succession and management of digital legacy, and argue that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digital legacy make it difficult to apply conventional inheritance law as it stands. Each bill seeks to address this issue by introducing new provisions withi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The core components identified in this study—such as the definition and scope of digital legacy, methods of appointing and empowering fiduciaries, potential conflicts with existing laws, protection of users' right to express their intent during life, and the role of service providers—along with the comparative analysis of foreign legislation and phased policy options, were utilized in the review process of these proposals.

6. Expectations

If the policy measures proposed in this study are implemented, they are expected to ensure the legitimate rights of bereaved family members to access the digital information of the deceased, while clearly delineating the scope of responsibility for service providers. This would help achieve a balanced protection of interests for both parties. Ultimately, such a framework would contribute to enhancing public trust in the digital environment. From the user's perspective, it would institutionalize the respect for self-determination during one's lifetime, while for service providers, it would reduce legal uncertainty and associated risks. Furthermore, the proposed system is anticipated to prevent social conflicts and legal disputes surrounding digital legacy and, in the long term, provide a

legal foundation for the invention and application of new inheritance principles within online environments.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Recent Discussions on Digital Legacy in Korea and Abroad

-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for Digital Legacy in Major Countries
- Legislative Attempts on Digital Legacy in Korea
- Digital Legacy Policies of Major Service Providers

Chapter 3. Discussions on the Legal Institutionalization of Digital Legacy

- Perspectives of Service Providers and Users
- Review of Relevant Laws and Step-by-Step Policy Options

Chapter 4.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Chapter 5. Incorporation into Government Policy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개인(이하 이용자와 혼용)의 생전 온라인 활동이 방대해지면서, 사망 후 남겨지는 각종 디지털 정보(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유산(digital legacy)”으로 통칭)가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개인이 이메일, 소셜미디어, 클라우드 저장소, 온라인 게임 등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며 축적된 데이터는 사망 이후에도 사이버 공간에 남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고 상속할 것인지에 관한 일관된 기준이나 제도가 부재하여 사회적·법적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 본 연구는 개인의 생전 온라인 활동을 통해 남겨진 데이터의 사후 처리와 관련한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관련 법제화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디지털 유산의 정의

본 연구에서는 가장 광의의 개념인 “사망한 사람이 남긴 디지털 형태의 모든 자료”로서 디지털 유산을 정의하고자 한다. 이는 해당 정의의 타당성과 적합성보다는 이하 이루어질 논의의 범위를 최대한 제한하지 않기 위함이다. 한편, 기존 연구와 사례를 살펴보면 개인이 생전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며 축적한 데이터와 정보를 디지털 유품, 디지털 유산, 디지털 자산 등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해 지칭해 왔으며, 용어별로 의미하는 범위와 관점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표 1-1〉 디지털 유산 관련 용어의 정의

용어	출처	설명
디지털 유품	김기중(2010)	• 단어 자체의 의미로는 사망한 사람이 남긴 디지털 형태의 모든 자료를 의미 • 논의되고 있는 맥락에서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다 사망한 이용자가 생존 당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그 서비스 제공자가 관리하는 영역에 남긴 디지털 자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이해되고 있음. 즉, '디지털 유품'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영역에 남겨진 이용자 작성 또는 보관의 '디지털 정보'
	윤주희(2011)	• 사자(死者)가 생전에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면서 축적해 놓은 정보로서 단순히 기록의 의미가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
	네이버	• 사망한 사람이 남긴 모든 형태의 디지털 자료로 정의할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는 사망한 개인이 생존 당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서비스 이용 내역
디지털 유산	김현수 외(2011)	• 대체로 '사자(死者)가 남겨놓은 재산 중 디지털 형태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 • 법적 측면에서 "사망 시 보유하고 있던 모든 디지털 형태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로 정의
	최경진(2013)	• 사망 시 보유하고 있던 모든 디지털 형태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 • 온라인상에 저장된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의 창작물(UCC 등),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음악, 동영상 등), 상표, 디자인, SNS의 게시물과 댓글, 도메인 이름, 계정 아이템, 아바타, 전자적 형태의 지급결제수단(게임머니, 가상화폐 등) 등이 포함될 수 있음
디지털 자산	미국 델라웨어주	• 전자적으로 생성되거나 전송된 것으로, 데이터, 텍스트, 이메일, 문서, 오디오, 비디오, 이미지, 소리, 소셜미디어 콘텐츠, 컴퓨터 소스 코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데이터베이스 등을 포함
	알래스카주 켄터키주 텍사스주	• 개인이 권리나 이익을 갖고 있는 전자 기록을 의미 • 텍사스주 법은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사운드, 코드, 컴퓨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등을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음을 명시 • 전자 기록이 아닌 기본 자산이나 부채를 포함하지 않음(그 자산이나 부채 자체가 전자 기록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포함)

디지털 유품과 디지털 유산, 그리고 디지털 자산은 유사해 보이지만 그 개념적 초점과 포괄 범위에 차이가 있다. 먼저 디지털 유품이라는 용어는 사망자가 남긴 각종 디지털

“혼적”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김기중(2010)은 디지털 유품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서버 등 온라인 공간에 남겨진 개인 자료로 한정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윤주희(2011)도 사이버 공간에 축적된 고인의 정보 중 단순 기록을 제외한 의미 있는 모든 것을 디지털 유품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들은 주로 온라인 서비스상에 남아 있는 게시물, 댓글, 사진, 이메일 등 개인의 디지털 흔적을 가리키며, 해당 디지털 정보 자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 디지털 유품은 망자가 생전에 이용한 온라인 서비스의 영역에 남은 디지털 콘텐츠로서, 전통적인 의미의 재산이 아닌 개인의 기록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또한 이 개념은 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저장 공간에 존재하는 데이터에 한정되므로, 고인의 하드디스크나 개인 기기 등에 남은 자료보다는 클라우드나 웹상에 남은 정보를 염두에 둔다.

반면 디지털 유산은 재산적 가치와 상속의 관점에서 디지털 정보를 바라보는 용어이다. 김현수 외(2011)는 디지털 유산을 사자의 남겨둔 유산 중 디지털 형태로 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재산상의 권리·의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마찬가지로 최경진(2013)은 디지털 유산을 사망 시 보유하고 있던 모든 디지털 형태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로 정의하고, 그 예시로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의에서 볼 수 있듯, 디지털 유산은 전통적인 유산의 개념을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한 것이다. 즉,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는 모든 재산적 가치를 디지털 유산으로 간주하며, 그 범위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콘텐츠뿐만 아니라 각종 계정에 담긴 재화나 권리(전자화폐, 포인트 등)까지 포함된다. 디지털 유품이 망자의 개인적 기록이라는 뉘앙스를 가진다면, 디지털 유산은 그것이 상속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라는 법적 함의를 가진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디지털 유산은 온라인에 국한되지 않고 오프라인 저장장치에 들어 있는 디지털 파일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데, 이는 그것들을 모두 재산적 가치의 유무 관점에서 평가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개인 PC에 저장된 사진이나 문서도 경제적·정서적 가치에 따라 유산의 일부로 고려될 수 있다.

한편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는 법률 및 정책 분야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보다 기술적이고 중립적인 표현이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해외 입법에서는 “digital asse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사람이 생전에 보유하거나 이용한 전자적 기록 일체를 포괄하는 정의를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델라웨어주 법률에서는 디지털 자산을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되거나 전달되는 모든 데이터, 텍스트, 이메일, 오디오, 비디오, 이미지 등”으로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텍사스주 법률에서도 “개인이 권리나 이익을 갖는 전자 기록”을 모두 디지털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자산은 포괄 범위가 매우 넓어, 개인이 가진 전자 형태의 모든 정보를 포함하지만, 엄밀한 의미의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예컨대 단순한 기록에 불과한 데이터나 고인의 개인적인 메모 등)도 기술적으로는 포함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다만 텍사스주 법처럼 디지털 형태로 표현되지 않은 실체적 자산이나 부채는 제외하는 등, 전통적 자산과 구분하기 위한 단서 조항을 두기도 한다. 요컨대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는 상속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디지털 정보를 하나의 자산 유형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접근권을 부여하기 위한 법적 정의로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뒤에서 살펴볼 디지털 유산 상속 관련 법제화 논의에서 중요한 기반 개념이 된다.

이상의 다양한 정의들을 비교해 보면, 용어 선택과 정의 범위에 따라 디지털 유산에 포함되는 대상과 그 법적 성격에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먼저 정의상의 범위를 보면, 디지털 유품은 대개 개인의 온라인 활동 기록 전체를 포괄하지만, 그중에서도 개인적 기록성에 방점이 찍혀 있고, 디지털 유산은 그중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부분에 중점을 둔다. 디지털 자산은 이와 달리 가치 여부를 불문하고 전자적 형태로 존재하는 모든 자료를 가리키며, 법률에서는 상속권자(유산 관리인, 상속인 등)가 접근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명칭의 어감 측면에서도, 유품(遺品)은 개인이 남긴 물건이라는 뜻으로서 추억이나 기록의 느낌이 강하지만 유산(遺産)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지칭하는 어감이 강하다. 자산(資産)은 말 그대로 자본적 가치가 있는 자원을 의미하므로, 디지털 자산이라 하면 전자적 형태의 재산적 자원에 초점을 맞춘 용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미묘한 차이로 인해 각 용어가 지칭하는 범위에 차이가 있으며, 정책이나 법적 논의에서는 어떤 용어를 채택하느냐에 따라 논의의 범주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유산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대상을 분류한 사례도 있다. 김현수 외(2011)는 디지털 유산의 범위를 현실적인 분류 기준에 따라 제시하였는데, 아래 표와 같이 네 가지 항목으로 구분하고 있다.

구분	내용
Entertainment/문화	게임 아이템 및 아바타(Avatar), 디지털 형태의 음악, 동영상 등(User Created Contents 포함)
온라인상의 활동 및 커뮤니케이션 내용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SNS, 미니 홈페이지, 온라인 카페 등의 게시물, 댓글, 사진 등
가상화폐	각종 포인트, 마일리지, 사이버 머니 등
기타	인터넷 도메인, 특정 온라인 계정이용권 등

위 표의 분류를 통해, 디지털 유산이 개인의 취미나 문화 활동에서 발생한 자산(게임 아이템 등)부터 사회적 소통 활동의 결과물(SNS나 블로그에 남긴 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이버 자산(포인트 등), 그 밖의 권리(도메인, 계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주를 포함함을 알 수 있다. 항목별로 세부 성격이 다르므로, 법적 처리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게임 아이템이나 가상화폐는 재산적 가치가 비교적 명확하므로 상속 재산으로 볼 여지가 크지만, SNS나 블로그에 남긴 글은 고인의 개인적 표현물이자 타인과의 교류 기록이므로 함부로 경제적 가치로만 볼 수는 없다. 도메인 이름이나 이메일 계정의 이용권은 계약에 기반한 권리로서, 약관에 따라 양도가 금지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주별 분류는, 디지털 유산을 유형화하여 각각에 맞는 상속 또는 처리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된다. 실제로 법률가나 연구자들은 디지털 유산을 성격별로 분류하여 상속 규칙을 제안하기도 하는데, 이는 일률적인 규제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각 정의가 내포하는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디지털 유산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상속 가능성(승계 여부), 법적 성격, 실체 유무, 저장 위치, 통제 권한의 주체 등의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 상속성과 법적 성격:

디지털 정보가 전통적인 재산처럼 상속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가 핵심 쟁점이다. 민법상 상속은 망인의 사망과 동시에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 일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디지털 유산이 재산권적 성격을 가지면 상속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최경진(2013)은 디지털 유산을 재산상의 권리·의무로 정의함으로써, 이를 전통적 상속의 틀 안에 위치시키고 있다. 예컨대 고인이 유료로 구매한 전자책, 음악 파일, 게임

아이템, 가상화폐 등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므로 상속 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 반면 고인의 이메일이나 SNS 대화 내용처럼 개인적이거나 신체에 속한 성격(일신전속적)의 정보는 상속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러한 정보는 재산권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인격적·사생활적 권리에 가까워, 상속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별도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실제로 윤주희(2011)는 디지털 유품 중 단순한 기록의 의미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고 함으로써, 일신전속적 성격의 정보는 상속될 수 없음을 시사하였다. 요컨대 디지털 유산을 구성하는 개별 항목마다 상속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쟁점이 존재하며, 이때 그것의 법적 성질(재산권인지, 인격권인지, 계약상의 권리인지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현행 법체계에서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디지털 정보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규율할지에 따라 상속 범위와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입법 과정에서 이에 대한 사전 합의가 필요하다.

- 실체 여부(무형성):

디지털 유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다. 전통적인 유산은 토지나 현금처럼 물리적이거나 법적으로 명확한 객체인 경우가 많지만, 디지털 정보는 네트워크를 통해 분산 저장되고 복제될 수 있어 그 경계가 불분명하다. 예를 들어 고인의 사진첩이 클라우드에 있고 여러 가족이 공유하고 있다면, 그 파일의 원본과 사본을 구별하기 어렵고, 하나의 데이터를 여러 사람이 동시에 소유한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무형 자산인 디지털 정보는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상속인이나 관리자가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실제로 고인이 어떤 온라인 계정들을 갖고 있었는지, 어디에 어떤 데이터를 남겼는지를 파악하지 못하면 상속 절차에 올릴 수도 없다. 이처럼 디지털 유산의 무형성과 비가시성은 상속 절차에서의 발견·인도·분배를 어렵게 하는 요소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디지털 유산 목록화, 사전 지정 제도 등)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 저장 위치와 접근권:

디지털 유산은 주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서버나 클라우드와 같은 제3자의 저장 공간에 위치한다는 특징이 있다. 전통적인 유산은 집이나 금고처럼 고인의 지배하에 있던 곳에서 유족에게 인도되지만, 디지털 자료는 서비스 제공자의 관리 영역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접근 자체가 제한된다. 김기중(2010)이 지적하였듯이 디지털 유품은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의 영역에 남겨진 정보이므로, 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약관이나 개인 정책에 따라 유족이 임의로 열람하거나 인계받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디지털 유산에 대한 접근권의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망인의 데이터라 하더라도 물리적으로는 서비스 회사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고, 접근 권한도 생전에는 본인만 가졌기 때문에, 사망 후에는 서비스 제공자가 사실상 통제를 갖는 상황이 된다. 유족이나 상속인이 이에 접근하려면 법적 권한을 증명해야 하거나, 때에 따라 법원의 명령이 필요하기도 하다. 따라서 디지털 유산 논의에서는 서비스 제공자의 협조 의무나 법적 요건을 마련하여, 정당한 상속인이 디지털 정보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진다.

- 통제권의 주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디지털 정보에 대한 생전 통제권자는 이용자 본인이지만, 사후에는 그 통제권이 누구에게 넘어가는지가 불분명하다. 전통적인 유산은 상속인이 승계받지만, 디지털 정보는 계정 단위로 관리되고 이용자 본인의 비밀번호나 인증 없이는 접근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상속인이라도 바로 통제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또한 서비스 약관에서 계정의 양도나 공유를 금지하고 있어, 원칙적으로는 타인이 그 계정을 이어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예도 있다. 결국 사후에 디지털 유산을 통제할 주체를 둘러싸고 망인의 의사, 상속인의 권리, 서비스 제공자의 권한, 제3자(고인의 통신 상대방)의 프라이버시 등이 충돌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상속인이 고인의 모든 재산과 정보를 당연히 물려받아야 한다는 입장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생활 침해 우려나 제3자의 비밀보호 관점에서 제한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이렇듯 디지털 유산에 대한 통제권은 단순한 개인 자산의 이전 문제가 아니라 프라이버시, 계약법, 상속법이 교차하는 복잡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유산의 정의와 범위를 둘러싸고 여러 견해와 쟁점이 존재하는 것은, 디지털 유산 개념 자체가 새롭게 부상한 복합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디지털 유산이라는 용어는 2010년대에 들어 학계와 실무에서 논의가 시작된 비교적 신생 개념으로서, 아직 법률적으로 명확히 정립된 정의가 없다. 윤주희(2013)는 “디지털 유산”이 현재까지 법적 개념으로 사용되지 않고, 통상적으로 온라인상에서 망자가 생전에 축적한 정보들을 상속

또는 승계 관점에서 총칭하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이유로는 디지털 유산을 구성하는 대상들이 매우 다양하고 기술 발전에 따라 계속 변화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해, 디지털 유산에는 SNS 게시물 같은 개인 기록부터 가상화폐 같은 새로운 자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요소가 포함되며, 어떤 것은 재산적 권리이고 어떤 것은 개인정보에 가까워서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사회적인 인식도 시간이 지나며 변화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온라인상의 개인정보에 큰 가치를 두지 않았으나 최근 고령층의 인터넷 사용 증가와 SNS 대중화로 인해 고인의 디지털 기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측면이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학계와 업계, 이용자 사이에 용어 사용이 통일되지 않고 각각의 관점에서 정의를 제시하다 보니, 아직 모두가 합의하는 표준적 정의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디지털 유산 관련 개념의 복잡성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여러 범주로 나누어 설명되기도 한다. 윤주희(2013)는 디지털 유산을 정의하는 방식과 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가능 범주를 제시하였다. 이는 앞서 살펴본 여러 정의들을 포괄하는 범주로 볼 수 있다.

- (1) 사자(死者)가 생전에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면서 축적해 놓은 정보로서 단순히 기록의 의미가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
- (2) 사망 시 보유하고 있던 모든 디지털 형태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
- (3) 사망한 사람이 남긴 디지털 형태의 모든 자료 또는 사망한 이용자가 인터넷 공간에 남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화상, 동영상 등 시각과 청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정보

- 망자가 생전에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며 축적해 놓은 정보 일체(단순한 기록에 불과한 것 제외): 고인이 인터넷상에서 남긴 거의 모든 디지털 흔적을 말하며, 개인이 생성하거나 게시한 콘텐츠, 업로드한 파일 등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별 의미 없이 자동으로 남는 로그 등은 제외하여, 의미 있고 가공된 정보를 중심으로 본다. 이 범주는 주로 디지털 유품의 개념과 상통하며, 고인의 온라인 기록 전체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 사망 시 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모든 디지털 형태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 전통적 상속의 관점에서 본 정의로, 망인이 소유한 재산적 가치 있는 모든 디지털 자산을 의미 한다. 이는 디지털 유산 개념에 부합하며, 예를 들어 온라인 계정에 남아 있는

잔액, 전자지갑의 암호화폐, 유료 구독권, 지적재산권(저작권) 등 경제적 권리가 이에 포함된다. 이 범주에서는 디지털 정보를 상속 대상 재산으로 보고, 법적 권리의 승계를 강조한다.

- 망자가 남긴 디지털 형태의 모든 자료 또는 망인 이용자가 인터넷상에 남긴 문자·부호·음성·영상 등 감지 가능한 정보: 이는 디지털로 존재하는 모든 유형의 콘텐츠를 망라하는 가장 광범위한 범주로, 망인이 남긴 모든 전자 기록을 포괄한다. 블로그 글, SNS 게시물은 물론이고 이메일, 채팅 기록, 디지털 사진·동영상, 음성메시지 등에 이르기까지 시각 또는 청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모든 디지털 정보를 포함한다. 이 범주는 (1)과 (2)를 아우르는 개념으로서, 개인 기록이든 재산적 가치 자료든 구분하지 않고 일단 망인이 남긴 디지털 자료는 모두 포함한다는 접근이다. 가장 포괄적이지만 막연한 정의이기도 하여, 실제 입법 시에는 이처럼 넓은 범위를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상의 세 가지 범주는 디지털 유산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각을 보여준다. 현실적인 논의에서는 이들 범주를 혼합하여 접근하거나, 논점에 따라 범위를 달리 설정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법률 제정을 논한다면 (2)의 범주에 초점을 맞추되 (1)과 (3)의 요소를 얼마나 고려할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문화적·사회적 측면에서는 (1)이나 (3)의 범주까지 포함하여, 고인의 모든 디지털 흔적을 기리고 관리하는 문제를 논의하기도 한다.

제2장 국내외 디지털 유산 논의 현황

제1절 주요국 디지털 유산 관련 법·제도 현황

1. 미국

미국에서 디지털 유산에 대해 연방법과 주법 모두 적용될 수 있지만, 직접적인 주요 규제는 주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연방법의 경우, 디지털 유산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법률보다는 개인정보 보호와 전자통신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을 포함하고 있다. 「저장통신법(Stored Communications Act, SCA)」은 전자통신과 데이터 저장에 대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을 담고 있으며, 「전자통신프라이버시법(ECPA)」¹⁾의 일부분으로 1986년에 제정되었다. 저장통신법은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계정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디지털 유산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연방법 중 「컴퓨터 사기 및 남용방지법(Computer Fraud and Abuse Act, CFAA)」의 경우,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무단 접근을 금지함에 따라 사망자의 디지털 자산에 접근하려는 상속인이 법적 허가 없이 접근할 경우 이 법을 위반할 가능성도 있다.

주법의 경우, 대부분의 주가 미국 통일법 위원회(Uniform Law Commission)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개정 통일 수탁자 접근법(Revised Uniform Fiduciary Access to Digital Assets Act, 이하 "RUFADAA")」²⁾을 채택하고 있다. 2016년에는 20개 주가, 2017년 17개 주, 2018~2024년 12개 주가 RUFADAA를 기반으로 주법을 제정하였으며(총 49개 주), 2025년 5월

1) ECPA는 전화 통화 도청에 대한 제한을 전자 데이터 전송에도 적용하도록 확대한 도청법(Wiretap Act), 저장통신법(Stored Communications Act, SCA), 펜 레지스터법(Pen Register Act)으로 구성

2) RUFADAA는 사망 또는 무능력 시 재산 집행자와 수탁자에게 소유자와 동일한 온라인 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UFADAA의 개정판임

14일 기준 1개 주(매사추세츠)가 발의한 상태이다. RUFADAA는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s)의 범위를 정하고, 이와 관련한 주체(이용자, 관리자, 수탁자)를 정의하며, 이용자의 사망 또는 무능력시에 디지털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를 표준화하고 있다.

RUFADAA는 ‘이용자’의 디지털 재산과 전자 통신 목록 및 내용을 “디지털 자산”이라 통칭하며, ‘관리자’는 디지털 자산을 서버에 저장하는 회사, ‘수탁자’는 타인의 재산을 관리할 법적 권한과 이용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의무를 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디지털 자산의 처리와 상속 대한 RUFADAA의 기초는 망자의 생전 의사결정을 가장 우선시하며, 만일 망자의 사전 의사가 없는 경우 서비스제공자 약관을 적용하도록 한다. 위 두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기본 규칙 또한 제공하고 있다. 이 기본 규칙은 디지털 자산을 ① 전자 통신 내용, ② 전자 통신 목록, ③ 다른 유형의 디지털 자산(무형의 개인 자산)으로 나눠 각각 수탁자의 접근 범위와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용자 및 제3자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는 전자 통신 내용에 대해서 가장 보수적인 규칙(이용자의 동의가 필요)을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1〉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개정 통일 수탁자 접근법(RUFADAA)」의 주요 내용

-
- 개인의 디지털 재산과 전자 통신을 통칭하여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며, 이러한 자산을 서버에 저장하는 회사를 “**관리자(custodians)**”라고 함
 -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접근은 일반적으로 재산법보다는 서비스 약관 계약에 의해 규율되며, 이에 따라 인터넷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자신의 디지털 자산을 관리할 능력을 상실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수탁자(fiduciary)**란 타인의 재산을 관리할 법적 권한과 그 사람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의무를 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함. 개정된 디지털 자산에 대한 통일 신탁 접근법(이하 RUFADAA)은 네 가지 일반적인 유형의 수탁자를 다루고 있음:
 1. 사망한 사람의 유산을 관리하는 유언 집행자 또는 관리자
 2. 법원이 지정한 보호 대상자 재산의 후견인 또는 관리인
 3. 위임장에 따라 임명된 대리인
 4. 수탁자
 - RUFADAA는 인터넷 이용자에게 유형 자산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디지털 자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상충하는 지침이 있으면 3단계 우선순위 시스템을 제공함
 1. 관리자가 일반 서비스 약관과 별도로 온라인 도구를 제공하여 이용자가 이용자의 디지털 자산에 액세스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지정하거나 관리자에게 이용자의 디지털 자산을
-

-
- 삭제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경우, RUFADAA는 이용자의 온라인 지침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도록 함
2. 관리자가 온라인 계획 옵션을 제공하지 않거나 이용자가 제공된 온라인 도구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이용자는 유언장, 신탁, 위임장 또는 기타 서면 기록으로 디지털 자산의 처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지시를 내릴 수 있음
 3. 이용자가 온라인 또는 기존 유산 계획에서 어떠한 지시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 계정의 서비스 약관에 따라 수탁자가 이용자의 디지털 자산에 액세스할 수 있는지가 결정됨. 서비스 약관에 수탁자의 액세스 권한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경우 RUFADAA의 기본 규칙이 적용됨
- RUFADAA의 기본 규칙은 ‘전자 통신의 내용’, ‘전자 통신의 목록’ 및 기타 유형의 디지털 자산을 구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이익과 수탁자의 접근 필요성 간의 균형을 맞추려고 시도함
 - **전자 통신 내용**에는 이용자의 이메일 메시지, 문자 메시지 및 사적인 당사자 간의 기타 메시지의 제목과 본문이 포함되는데, 수탁자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전자 통신의 콘텐츠에 액세스할 수 없음. 필요한 경우 수탁자는 이용자의 **전자 통신 목록**(기본적으로 발신자와 수신자의 주소, 메시지 전송 날짜와 시간이 표시된 통신 목록)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음
 - **다른 유형의 디지털 자산**은 통신이 아닌 무형의 개인 자산임. 예를 들어,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이 피상속인의 업무 파일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경우 RUFADAA에 따라 파일 캐비닛에 저장된 파일뿐만 아니라 “클라우드”에 저장된 모든 파일에 액세스할 수 있음.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에서 자금을 분배하는 유언집행인은 피상속인의 가상화폐 계좌(예: 비트코인)에도 액세스할 수 있음
 - RUFADAA 섹션 15에 따라 디지털 자산의 수탁자는 유형 자산의 관리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동일한 수탁 의무가 적용됨. 따라서 예를 들어 유언 집행자는 피상속인의 기밀 통신 내용을 공개하거나 피상속인의 계정으로 이메일을 보내 피상속인을 사칭해서는 안 됨. 수탁자의 디지털 자산 관리도 다른 법률에 따라서도 제한될 수 있음. 예를 들어, 수탁자는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디지털 파일을 복사하거나 배포할 수 없으며, 계정의 서비스 약관에 따른 이용자의 권한을 초과할 수 없음
 - 디지털 자산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얻으려면 RUFADAA에 따라 수탁자는 요청서와 함께 임명장, 법원 명령서 또는 신탁 증서 등 수탁자 권한을 부여하는 문서의 인증 사본을 첨부하여 보관자에게 보내야 함. 명백히 유효한 액세스 요청을 받은 디지털 자산의 보관자는 선의로 규정을 준수하여 행한 행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됨
 - RUFADAA는 유언 검인, 후견, 신탁 및 위임장에 관한 각 주의 기존 법률과 함께 작동하도록 설계된 오버레이 법령이며, 디지털 시대에 꼭 필요한 법령으로, 모든 주 의회가 가능한 한 빨리 제정해야 함
-

출처: Uniform Law Commission 홈페이지(www.uniformlaws.org/)

다음 두 표는 캘리포니아주와 매사추세츠주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주법 내용을 비교하여 RUFADAA의 실질적 적용사례를 검토하였다.³⁾ 결론적으로 두 주 모두 수탁자의 범위⁴⁾, 관리 권한, 관리의무 및 책임, 서비스 제공자의 정의, 역할, 비용 부담, 면책조항과 같은 주요 항목에 대해 RUFADAA의 가이드라인과 기본 규칙을 벗어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2〉 디지털 자산에 대한 대리인의 권한 관련 매사추세츠주와 캘리포니아주 내용

구분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
디지털 자산 관리인 범위와 권한	• (포괄적 관리인) 유언 집행인, 신탁 관리자, 후견인, 대리인 • (관리 권한) 고인의 컴퓨터 파일, 웹 도메인, 가상화폐 등 디지털 재산을 일반 유산과 동일하게 관리할 권한을 가짐 － 다만 이메일, 문자, SNS 메시지 등 전자 통신 내용에 접근하는 경우, 해당 사용자가 생전에 유언장, 신탁 문서, 위임장 등 기록으로 명시적 동의를 남긴 때에만 허용됨	• (관리인 범주 확대) 처음에는 RUFADAA를 제한적으로 도입하여 사망한 사용자의 유언 집행인과 신탁 관리자에게만 디지털 자산 접근 권한을 인정했으나, 2024년 개정법(SB 1458)을 통해 법률상 “신탁 관리인”의 범위에 후견인과 대리인을 추가 • (관리 권한) 전자 파일, 소셜 미디어 계정, 가상화폐 등 대부분의 디지털 재산을 다른 자산과 마찬가지로 관리할 수 있음 － 다만 이메일 등 통신 내용에 대한 접근은 사용자가 온라인 도구 또는 유언장, 신탁, 위임장 등 기록을 통해 명시적으로 공개를 승인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별도의 동의가 없을 때는 통신 내역 목록(상대방, 날짜 등)만 확인할 수 있고 메시지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음

3) 델러웨어주와 텍사스주도 동일한 항목에 대해 주목할 만한 변수 없이 RUFADAA를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4) 캘리포니아주는 디지털 자산 관리인의 범위를 다소 제한적으로 설정하였다가 2024년 개정을 통해 RUFADAA의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확대하였다.

구분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
관리인의 의무와 책임	• (신탁 관리인의 의무) 디지털 자산을 처리할 때도 일반 재산을 관리할 때와 동일한 주의 의무, 충실 의무, 비밀 유지 의무가 부과됨 – 관리인의 권한 행사는 해당 계정의 서비스 약관과 관련 법률(저작권법 등)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사용자를 사칭하는 행위는 금지됨	• (신탁 관리인의 의무) 신탁 관리인의 의무와 범위: 신탁 관리인은 디지털 자산을 다룸에 있어 주의 의무, 충실 의무, 기밀 유지 의무 등 일반적인 신탁 의무를 준수해야 함 – 관리인의 권한 행사는 해당 계정의 서비스 약관과 관련 법률(저작권법 등)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사용자를 사칭하거나 법을 우회하는 행위는 금지됨 – (면책) 신탁 관리인이 권한 내에서 행동할 경우 해당 사용자의 '승인된 사용자'로 간주하여 컴퓨터 사기 및 부정 접근 방지법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음

〈표 2-3〉 디지털 자산 관련 서비스제공자의 역할 관련 매사추세츠주와 캘리포니아주 내용

구분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
서비스 제공자의 정의	• 사용자의 디지털 자산을 전송, 보관, 처리하거나 관리하는 모든 개인 또는 기업으로 정의 – 이메일 서비스, 소셜미디어 플랫폼, 클라우드 저장소 등 사용자 계정을 유지·운영하는 대부분의 온라인 사업자가 해당	• 디지털 자산을 전달, 처리, 저장하거나 서비스하는 주체로 폭넓게 정의 – 좌동
디지털 자산 공개 및 접근	• 신탁 관리인으로부터 적법한 요청과 필수 서류가 제출되면, 서비스 제공자는 통상 60일 이내에 해당 사용자의 디지털 자산 정보를 공개하거나 계정을 폐쇄하는 등 요청된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 – 제공되는 정보는 계정에 저장된 파일이나 전자통신 목록 등으로 한정되며, 전자통신 내용은 사용자의 동의가 확인된 경우에만 전달	• 서비스 제공자는 신탁 관리인으로부터 계정 데이터 공개 또는 계정 폐쇄 요청을 받은 경우, 요구된 서류(사망 진단서, 유언 집행인 임명장, 신탁 증서 또는 위임장 사본 등)가 제출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응해야 함 – 통신 내용 제공을 포함하는 요청의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의 동의 여부에 대한 확실한 증거 또는 법원의 명시적 허가 명령을 요구할 수 있음

구분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
비용과 부담	-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 제공에 드는 합리적인 행정 비용을 신탁 관리인에게 청구할 수 있음 - 요청 이행이 과도한 기술적 부담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공자는 법원에 요청 범위의 조정이나 대체 방식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음 - 법원이 해당 요청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과도한 부담이라고 인정하면 제공 방식 변경이나 범위 제한을 명령할 수 있음	-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 공개 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합리적인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허용 -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 기기의 비밀 번호를 공유할 의무가 없고, 암호화된 장치나 데이터의 복호화를 강제받지 않음 - 만약 특정 요청이 과도한 부담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제공자 또는 신탁 관리인은 법원에 요청 범위의 축소나 대체 방안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여 조정을 받을 수 있음
면책조항	제공자는 이 법을 준수하여 선의로 행위를 한 경우 법적 책임으로부터 면제	제공자는 이 법을 준수하여 선의로 행위를 한 경우 법적 책임으로부터 면제

2. 캐나다

미국 주법에 반영된 RUFADAA를 캐나다에서도 2016년에 도입하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채택되지 않았다. 캐나다의 경우, 디지털 유산과 관련한 연방법은 없으며 대부분의 주에서도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으나, 서스캐처원과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만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제3자의 접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⁵⁾

온타리오주는 상속법에 따라 재산 관리인이 재산을 관리하고 분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디지털 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며, 마찬가지로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상속법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토지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재산을 개인 재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2020년 6월 29일 발효된 서스캐처원의 「디지털 정보에 대한 수탁자 접근법(The Fiduciaries Access to Digital Information Act)」은 디지털 자산을 “전자, 자기 또는 광학 수단 또는

5) ERLEY-ROBERTSON, HILL & MCDUGALL LLP(2022. 11. 10.), “What Will Happen to Your Digital Assets Upon Your Death or Incapacity?”, <https://perlaw.ca/2022/11/10/what-will-happen-to-your-digital-assets-upon-your-death-or-incapacity/>

기타 유사한 수단에 의해 디지털 또는 기타 무형의 형태로 생성, 기록, 전송 또는 저장되는 기록”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2022년 1월 1일 발효된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접근법」(Access to Digital Assets Act)도 디지털 자산을 서스캐처원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상기 두 법 모두 수탁자에게 디지털 자산의 ‘관리인’(은행, 보상 프로그램 또는 소셜미디어 제공업체 등)과 서비스 계약을 맺은 ‘계정 소유자’(이용자)의 디지털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직원이 고용주의 일상적 업무 과정에서 사용하는 고용주의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어 수탁자는 고용주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접근을 요청할 수 없다. 또한, 해당 법은 디지털 사업자산이 아닌 디지털 개인 자산에 적용된다.

이용자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수탁자의 접근 권한은 유언장 또는 표준위임장(Point of Attorney, POA)에 명시된 지침에 따르므로 수탁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싶은 자산이 있는 경우 수탁자의 접근 권한에 대해 침묵하거나 그러한 접근 권한을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등 유언장 및 표준위임장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서스캐처원에서는 수탁자의 서비스 계약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수탁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경우 해당 계약을 집행할 수 없다.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에서는 2022년 1월 1일 이후 별도의 적극적 행위로 그러한 제한에 동의하지 않는 한 무효가 된다.

〈표 2-4〉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주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접근법」 주요 조항

2부 -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접근

3. 디지털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수탁자의 권리

(1) (2) ~ (4)항에 따라, 그리고 2(1)항의 권한 출처에 따라 계정 소유자의 수탁자는 계정 소유자의 디지털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유언장 등에 따른 권리

(2) (4)항에 따라, (1)항에 따른 수탁자의 접근 권한은 해당되는 경우 접근 권한과 관련된 지침을 제공하는 다음의 조건에 따른다.

- (a) 사망한 계정 소유자의 유언장
 - (b) 사망한 계정 소유자의 재산 관리 유언장
 - (c) 신탁 관리 명령
 - (d) 위임장
-

-
- (e) 신탁
 - (f) 법원의 명령

서비스 계약에 따른 권리

- (3) (4)항에 따라, (1)항에 따른 수탁자의 접근 권한은 계정 소유자가 해당 조항에 동의하는 경우 계정 소유자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수탁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서비스 계약 조항의 지침에 따른다.
- (a) 이 법이 발효된 날짜 또는 그 이후에; 그리고
- (b) 서비스 계약의 다른 조항에 대한 계정 소유자의 동의와는 별개의 적극적 행위에 의한 경우

가장 최근의 지시에 따른 권리

- (4) 수탁자의 디지털 자산 접근 권리와 관련하여 (2)항에 언급된 명령서 또는 기타 문서를 통해 또는 (3)항에 기술된 동의를 통해 두 번 이상의 지시가 내려진 경우, 수탁자의 디지털 자산 접근 권리는 가장 최근의 지시에 따른다.

접근 또는 이용의 효과

- (5) 이 섹션의 목적상, 계정 소유자가 디지털 자산에 접근하거나 계정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서비스 계약 조항에 따른 지시가 계정 소유자에 의해 제공되거나 제공된 것으로 추론할 수 없다. 2021.C.27,S.3.

4.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수탁자의 의무

유형의 개인 재산과 관련하여 수탁자에게 부과된 법률상 의무(해당 의무 수행에 대한 요건 포함)는 계정 소유자의 디지털 자산과 관련하여 수탁자에게도 적용된다. 2021.C.27,S.4.

5. 수탁자의 권한

- (1) 본 법에 따라 계정 소유자의 디지털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신탁 관리인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 (a) 해당 법률에 따라 계정 소유자가 살아 있고 완전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면 계정 소유자가 취할 수 있었을 디지털 자산에 관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다.
 - (b) 보관자가 수탁자에게 디지털 자산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계정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c) 디지털 자산의 승인된 이용자로 간주한다.

서비스 계약의 효력

- (2) 계정 소유자가 본 법 시행일 또는 그 이후에 서비스 계약의 다른 조항에 대한 계정 소유자의 동의와는 별개로 적극적인 행위를 통해 수탁자의 계정 소유자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서비스 계약의 조항에 동의하지 않는 한, 계정 소유자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수탁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서비스 계약의 조항은 무효이다,
 - (a) 계정 소유자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수탁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서비스 계약의 모든 조항은 무효이다.
 - (b) 서비스 계약에도 불구하고 본 법에 따른 수탁자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접근은 서비스 계약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서비스 계약의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다.
-

유형 재산에 대한 권한

(3) 수탁자가 디지털 자산을 보유, 유지, 수신, 저장, 처리 또는 전송할 수 있는 계정 소유자의 유형 개인 재산에 대한 권한을 갖는 경우, 수탁자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 (a) 해당 재산 및 해당 재산에 저장된 디지털 자산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 (b) 해당 자산의 승인된 이용자로 간주한다.

6. 접근이 제한되는 경우 조항의 집행 불가

다른 준거법 또는 서비스 계약의 법률 조항 선택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계약의 조항은 본 법에 반하여 수탁자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한도 내에서 수탁자에 대해 집행할 수 없다.

7.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접근 요청

(1) 이 법에 따라 계정 소유자의 디지털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수탁자는 서면으로 요청하고 요청서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 자산의 관리인에게 접근을 요청할 수 있다.

- (a) 법원의 원본 명령서 또는 수탁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기타 문서
- (b) 명령서 원본 또는 수탁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기타 문서의 인증 사본

출처: Prince Edward Island, 「Access to Digital Assets Act」

3. 독일

유럽연합(EU) 차원의 법규범은 제정되지 않았지만, 개별 회원국 중 해석론 또는 판례를 통해 디지털 유산의 상속을 인정하는 사례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독일이다.

독일은 민법의 상속 일반 원칙에 따라 사자(死者)의 법정상속인이 디지털 정보를 상속할 수 있게 한 판례들이 존재하며,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로는 디지털 유산 상속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홈페이지, 이메일 계정,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상속할 수 있고, 상속한 디지털 유산을 삭제할지 또는 지속 관리할지도 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온라인 회원 상태를 유지하여 일정 기간 추모 공간으로서의 관리도 가능하다.⁶⁾

디지털 자산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주요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8년, 연방대법원은 소셜 네트워크 계정 이용계약이 상속 가능하다고 판결하였다(BGH, 2018년 7월 12일 판결, III ZR 183/17). 연방대법원은 상속받은 어머니가 사망한 딸의 Facebook 계정에 대한 접근에 대해 Facebook에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6) 유인호(2015), “디지털 시대의 상속권과 잊혀질 권리”, 『국제법무』, 제7집 제1호.

공정적으로 판결하였다. 독일 민법 제1922조제1항에 따라 상속인은 계약상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며, 이용계약에 따른 사망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데, 해당 법이 판례의 근거가 되었다. 소셜 네트워크 계정 이용계약은 일반적으로 일반 상속에 의해 계정 소유자의 상속인에게 이전되고, 상속인은 커뮤니케이션 콘텐츠와 함께 계정에 접근할 권리를 가지게 된 것이다.

2020년, 연방대법원은 이용자 계정에 대한 접근에는 사망자가 할 수 있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정과 그 내용을 기록할 가능성이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으나 (BGH, 2020년 8월 27일 판결, III ZB 30/20), 계정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권한은 없다고 판시하였다.⁷⁾ 메시지 및 기타 콘텐츠를 전송하고 제공해야 하는 네트워크 운영자의 의무는 계정과 관련된 것이지만, 이와 관계없이 일기나 개인 편지와 같이 매우 개인적인 내용이 포함된 법적 지위도 상속인에게 전달될 수 있다.

4. 프랑스

2016년 10월에 공포된 「디지털 공화국을 위한 법률(Loi pour une République numérique)」은 디지털 자산을 비롯한 디지털 관련 사항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 법은 디지털 사회의 주도권 확보를 위하여 “정부와 지식의 공개 정책”, “개인의 주도권과 권리 강화”, “디지털 진보주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법 제54조는 “자신과 관련된 개인 데이터의 사용을 결정하고 통제할 권리가 있다”를 포함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데이터에 관한 결정 및 통제권이 본인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디지털 유산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권리자가 사망하면 해당 정보 처리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이 사후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지침을 사전에 정하고 미리 정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제63조

7) Schlunn & Elseven, “Digital Estate in Germany: Social Media & Bitcoin / Cryptocurrencies | German Inheritance Law”,
<https://se-legal.de/digital-estate-in-germany-social-media-bitcoin-cryptocurrencies-german-inheritance-law/?lang=en>

제2항).

지침에는 해당 개인에 대한 정보 전체의 보관, 삭제, 이전 방법을 정한‘일반지침’과 지침 자체에서 처리 대상 정보를 특정하여 처리 방법을 정한‘특별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지침은 제3의 신뢰 기관(un tiers de confiance)을 정하여, 특별지침은 해당 정보의 처리 책임자를 정하여 대장에 기록하게 되어 있다.

〈표 2-5〉 프랑스 「디지털 공화국을 위한 법률」의 디지털 유산 관련 내용

제2장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제54조~68조)

섹션 1: 개인정보 보호(제54조~67조)

제54조 데이터 처리, 데이터 파일 및 개인의 자유에 관한 법률(1978년 1월 6일) 제78-17호 제1조는 다음 단락으로 보완된다:

“모든 사람은 이 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자신과 관련된 개인 데이터의 사용을 결정하고 통제할 권리가 있다”.

제63조 2. “제40조 1항 -I.- 본 조항에 따른 자격은 자격 보유자의 사망으로 소멸한다. 단, 아래의 II 및 III항에 따라 잠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I.- 누구나 사망 후 자신의 개인 데이터의 보존, 삭제 및 전달과 관련된 지침을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지침은 일반적이거나 구체적인 수 있습니다.

- “일반 지침”은 해당 개인과 관련된 모든 개인 데이터에 관한 것으로, 유럽정보보호위원회 (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és)가 인증한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제3자에 등록할 수 있다.
 - 일반 지침과 해당 지침이 등록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참조는 단일 등록부에 기록되며, 그 이용 약관 및 접근 권한은 정보자유위원회의 합리적인 공개 의견에 따라 발행된 Conseil d’Etat의 법령에 따라 설정된다.
 - 특정 지침은 이 지침에 언급된 개인 데이터의 처리에 관한 것이다. 이 지침은 해당 데이터 관리자에 등록됨. 이 지침은 데이터 주체의 구체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며 데이터 주체가 일반적인 사용 조건에 대한 단순한 승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없다.
 - 지침이 제3자와 관련된 개인 데이터를 포함하는 데이터의 통신을 규정하는 경우, 그러한 통신은 이 법률을 준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 “본인”은 언제든지 자신의 지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 “본인”은 본 II의 첫 번째 단락에 언급된 지시를 실행할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사망한 경우 해당 지침을 인지하고 관련 데이터 관리자에게 그 이행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지정이 없거나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지정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작성자의 사망에 따른 지침을 인지하고 관련 데이터 관리자에게 그 이행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개인 데이터와 관련된 처리 작업의 일반 이용약관에서 본 조항에 따라 개인에게 부여된 특권을 제한하는 계약 조항은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II.- 해당 지침에 반대되는 지침이나 진술이 없는 경우, 관련자의 상속인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망 후 이 섹션에 언급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사망자의 유산을 정리하고 정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속인은 재산 청산 및 분할에 유용한 정보를 식별하고 통신을 얻기 위해 자신과 관련된 개인 데이터 처리에 액세스할 수 있다. 또한 상속인에게 전달될 수 있는 가족 유품과 유사한 디지털 자산 또는 데이터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받을 수도 있다;
- “데이터 관리자는 데이터 주체의 사망을 고려한다. 이와 관련하여 상속인은 사망자의 이용자 계정을 폐쇄하거나, 자신과 관련된 개인 데이터의 처리 지속을 반대하거나, 업데이트하도록 할 수 있다.
- “상속인”이 그렇게 요청하는 경우, 데이터 관리자는 신청자에게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본 III의 제3항에 따라 요구되는 작업을 수행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 “III”에 규정된 권리 행사에 대한 상속인 간의 분쟁은 관할 재판소에 회부된다.
- “IV-모든 온라인 대중 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사망과 관련된 데이터의 운명을 알리고 이용자가 지정한 제3자에게 자신의 데이터를 공개할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III.- 제32조 제1항 제6호는 “사망 후 자신의 개인 데이터의 운명에 관한 지침을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라는 문구로 보충된다.

“IV.- 제67조 제1항 중 “제39조, 제40조 및”에 대한 참조를 “제39조, 제40조 제1항 및 조문”으로 대체한다.

출처: 프랑스 법령 포털, 디지털 공화국에 관한 법률 제2016-1321호(2016년 10월 7일),
<https://www.legifrance.gouv.fr/loda/id/JORFTEXT000033202746/>

5. 중국

2020년 5월 제13차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상속, 재산, 시민권 보호 등과 관련한 「민법」이 통과되고 2021년 1월 1일에 발효되었다. 기존의 상속법, 민법총칙 등이 2021년 1월 1일자로 폐지되고 민법으로 대체되었다. 그 이전인 2017년에 개정된 「민법총칙」에서 디지털 자산이 자연인의 합법적인 개인 재산임을 명시한 바 있다.

중국법상 “재산”이란 2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⁸⁾, 하나는 재산상의 권익을 뜻하며, 구체적으로 물권·채권·지적재산권 중의 재산상 권리, 주권 및 기타 투자적 권리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상의 권리와 재산상의 이익을 표한다. 다른 하나는 권리 보호의 관점에서 말하는 재산으로서, 유체물, 작품, 상표, 발명 등 지적재산권의 객체(민법전 제123조제2항), 데이터 및 가상자산(민법전 제127조) 등을 포함한다.

8) 유성함(2023), “중국에서의 가상자산 상속에 관한 법적 고찰”, 중국법연구, 제53집.

〈표 2-6〉 중국 「민법」의 자산 및 상속권 관련 내용

제123조 ① 민사주체는 법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을 가진다.

② 지식재산권은 권리자가 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객체에 가지는 전유권이다.

1. 저작물
2.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
3. 상표
4. 지리적 표시
5. 영업비밀
6. 반도체배치설계
7. 식물의 신품종
8. 법률에 규정된 기타 객체

제124조 ① 자연인은 법에 의하여 상속권이 있다.

② 자연인의 적법한 사유재산은 법에 의하여 상속할 수 있다.

제127조 법률에 데이터, 네트워크가상재산의 보호에 관하여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가상자산의 상속에 대한 기대감은 크나, 관련하여 구체적인 조항은 갖춰지지 않고 있다. 민법 제127조는 데이터와 가상자산에 대해 법적 보호를 한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지만, 가상자산의 법적 속성이나 보호경로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가상자산 상속 이론의 법적 근거를 명백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유성함, 2023). 한편, 디지털 자산의 범위에 디지털 콘텐츠는 포함하고 있지 않아 디지털 콘텐츠에 관한 상속인의 관리·통제 권한이 법률로 보장되지 않는다.

6. 일본

일본은 디지털 유산 정책이나 법 마련은 되어 있지 않으나, 다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2024년 11월, 소비자보호원(National Consumer Affairs Center, NCAC)은 ‘디지털 유산 계획(digital legacy planning)’을 제안하고 국민에게 비상 상황 발생 시 가족이 기기 잠금을 해제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⁹⁾ 소비자보호원은 디지털 유산을 복잡하지

않게 간소화하는 4가지 단계를 아래와 같이 제안하였다.¹⁰⁾

〈표 2-7〉 일본 소비자보호원의 디지털 유산 간소화 4가지 단계

-
- 비상 시 가족 구성원이 귀하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잠금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귀하의 구독 목록, 사용자 ID 및 비밀번호 목록을 관리하세요;
 - 이러한 세부 정보를 문서로 작성하여 사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세상을 떠난 후 다른 사람이 귀하의 스마트폰 및 기타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9) NCAC(2024. 11.), “Prepare your digital legacy plan so that your family will not be bothered by your contracts hidden in your smartphone”,
https://www.kokusen.go.jp/e-hello/news/data/n-20241120_1.html

10) Register(2024. 11. 21.), “Put your usernames and passwords in your will, advises Japan’s government”,
https://www.theregister.com/2024/11/21/japan_digital_end_of_life/

제2절 국내 디지털 유산 관련 입법 시도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유산 상속 관련 입법 활동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근간으로 2010년부터 시작되었다. 18대 국회(2008~2012년)에서 3건¹¹⁾ 발의되고, 19대 국회(2012~2016년)에서 2건¹²⁾ 발의되었으며, 21대 국회(2020~2024년)에서 2건¹³⁾ 발의되었으나, 모두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무안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22대 국회(2025~2028년)에서 발의된 개정안¹⁴⁾이 현재 진행 중이다.

18대 국회에서 발의된 3건의 개정안은 유사한 시기에 제안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에

11) 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안(2010. 7. 12.)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1R0V007E1I2D1H7H0L9J5R1J1L4A3,

박대해 의원 대표발의안(2010. 7. 21.)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1Y0R0S7R2K1A1O0X4B9I0P4K7Z5B3,

김금래 의원 대표발의안(2010. 9. 9.)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1R0P0L9J0Y9E1C5C2Z3O0A8G3W5I1

12) 김장실 의원 대표발의안(2013. 5. 22.)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Z1K3N0J5G2Z2T1X6K4S0L5X1H1G4Y7,

손인춘 의원 대표발의안(2013. 7. 10.)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1Q3B0P7V1P0N1O7I5A8U4W5Z0R4V5

13) 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안(2022. 7. 11.)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2J2H0I7A0U5K1D3W5X1G4A7U8G3U6,

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안(2023. 4. 25.)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S2R3Q0P4L2I4H1Q2O1N0M5U4T2S1R5

14) 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안(2025. 2. 11.)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2H5P0O2O0M3N0M9M1U0U0T9R0S0Q4

초점을 맞춰 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사망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한 것과 사망자의 블로그 등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한 것이 혼재되어 있으나, 디지털 유산의 범위와 기존 법률과의 충돌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채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김장실 의원안(2013. 5. 22)은 상속의 개념을 강화하였으며, 손인춘 의원안(2013. 7. 10)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초점을 맞췄다. 김장실 의원안은 “이용자가 생전에 획득한 게임 아이템, 작성한 게시물, 관리한 미니홈피·블로그 등”을 디지털 유산으로 정의하고, 상속인이 소유·관리 권한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손인춘 의원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 이용자의 사망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대한 이용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2건의 개정안에서는 디지털 유산에 관한 정의를 이용자가 작성·보관·관리 중인 ‘정보’로 표현하였으나¹⁵⁾, 소위 검토를 통해 재산적 가치 여부와 모든 정보 승계 가능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각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8〉 디지털 유산 관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및 주요 내용

대표 발의자 (발의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비고
유기준 의원 등 16인 (2010. 7.12)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사망시 인터넷상의 전자우편, 게시판과 같은 개인정보는 일신 전속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아 사망자의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 발생이 가능	- 이용자 사망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사망자 개인정보에 관한 목록을 상속인에게 제공하도록 함 - 상속인 요청시 사망자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필요한 보호조치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유통되고 있는 사망자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 - 상기의 내용에 대해 제29조의2 신설	개인정보 보호 측면 강조

15) 황보승희 의원안(2022. 7. 11)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해당 이용자가 작성하거나 보관 중인 정보”로, 허은아 의원안(2023. 4. 25)은 “자신의 계정에 보관·관리하고 있던 모든 정보”로 디지털 유산을 정의

대표 발의자 (발의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비고
박대해 의원 등 11인 (2010. 7.21)	• 이용자 사망시 사망자가 개설한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제3자가 관리하는 것은 현행법상 현실적으로 불가능 • 이용자 사망시 이용자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이용자의 사전 지정인 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사망자의 블로그 등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제3자에 의한 사망자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의 관리가 가능하게 하기 위함	• 이용자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에 따른 후견인은 이용자 사망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사망자의 미니홈피 또는 블로그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자 등은 배우자 등이 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2) • 이용자는 자신이 사망하거나 의식 불명 시 본인의 미니홈피 등을 미리 지정한 자에게 관리하게 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자 등은 지정된 자가 관리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함(제30조의2) • 제25조의2나 제30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미니홈피 등을 이용하거나 관리하게 한 자와 영리나 부정한 목적으로 미니홈피 등을 이용하거나 관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71조 제3호의2)	• 신탁 관리인에 후견인, 이용자의 사전 지정자 추가 • 처벌 조항 추가
김금래 의원 등 15인 (2010. 9.9)	※ 상기와 제안 이유가 동일하며 아래의 내용이 추가 • 이용자 사망시 대법원장은 사망신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 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통보하도록 하고, 이 통보에 따라 정보통신	• 이용자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후견인은 이용자 사망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사망자의 블로그 등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이용자 사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25조의2 제1항) • 서비스 제공자 등은 사망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시 배우자 등에게 사망자의 블로그 등을 관리 가능하게 함(제25조의2 제2항). • 대법원장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라 사망신고 날부터 6개월 이내 서비스 유형별 일	• 일정 규모 이상의 서비스 제공자에게 일괄적으로 이용자의 사망여부가 통보되도록 함

대표 발의자 (발의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비고
김금래 의원 등 15인 (2010. 9.9)	서비스 제공자는 사망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함으로써 사망자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	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통보(제28조의3) 서비스 제공자 등은 대법원장으로부터 사망자 통보를 받으면 배우자 등이 관리할 수 있도록 요청한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을 제외한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제29조 제5호)	일정 규모 이상의 서비스 제공자에게 일괄적으로 이용자의 사망여부가 통보되도록 함
김장실 의원 등 12인 (2013. 5.22)	- 현행법에 사망자의 게시물, 미니홈피 등의 승계·관리 규정이 없어 사망자의 미니홈피 등을 유족들이 고인을 추모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없음 - 서비스제공자는 약관에 관련 내용이 있으나 제공자마다 약관이 다르며 재산적 가치와 승계보다 이용자 사망 시 삭제하는 경우가 많음 - 게시물 및 미니홈피 등을 디지털 유산으로 인정하여 소유/관리 권한을 상속인이 승계받을 수 있게 함	- 이용자가 생전에 획득한 게임 아이템, 작성한 게시물, 관리한 미니홈피·블로그 등을 디지털 유산이라 하고, 그 소유 및 관리 권한의 승계에 관한 규정과 제3자의 이의 제기 규정을 마련함(제44조의11 제1항). - 이용자가 사망하기 전에 디지털 유산의 처리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정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지정한 처리 방법에 따라 디지털 유산을 처리하도록 함(제44조의11 제2항). - 디지털 유산의 승계에 관하여 본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제44조의11 제3항).	- 디지털 유산의 범위 확장 - 이용자가 사전에 디지털 유산의 처리 방법을 지정한 경우를 고려
손인춘 의원 등 13인 (2013. 7.10)	- 이용자는 자신의 사망 이후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을 지정할 수 있게 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 이용을 위해 수집하는 경우, 이용자의 사망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대한 이용	-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사망에 따른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방법을 지정할 수 있음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제22조 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의 사망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에 대한 이용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함	

대표 발의자 (발의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비고
손인춘 의원 등 13인 (2013. 7.10)	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	•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 또는 확인된 방법에 따라 개인 정보를 처리하여야 함 • 상기의 내용에 대해 제30조의3 신설	
황보승희 의원 등 11인 (2022. 7.11)	•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사망시(실종신고 받은 경우) 해당 이용자가 관리하고 있던 게시물 등(이하 “디지털 유산”이라 함)에 대한 관리 주체가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음 •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신고 받을시 「민법」상 상속인이 디지털 유산의 관리 권한을 승계할 수 있게 근거 마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망하거나 실종신고를 받은 이용자의 상속인이 요청하는 경우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해당 이용자가 작성하거나 보관 중인 정보(이하 “디지털 유산”이라 한다)의 관리 권한을 그 상속인이 승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관리 권한을 공유함 • 이용자가 사망 전에 디지털 유산에 대하여 관리자 지정, 삭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 유산의 처리 방법을 미리 지정한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그에 따라 디지털 유산을 처리해야 함 • 디지털 유산의 승계에 관하여 본 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상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상기의 내용에 대해 제44조의11 신설	• 신탁 관리인에서 후견인 제외 • 예외 상황의 경우 민법의 상속 규정 준용
허은아 의원 등 10인 (2023. 4.25)	• 이용자가 특정 기간 자신의 계정에 접속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자의 사망 또는 실종신고가 있는 경우 해당 이용자가 자신의 계정에 보관·관리하고 있던 정보(이하 “디지털 유산”이라 함)에 대한 처리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각자 설정한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 “디지털 유산”이란 이용자가 특정 기간 자신의 계정(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용 권한 계좌를 의미)에 접속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자의 사망 또는 실종신고가 있는 경우 해당 이용자가 자신의 계정에 보관·관리하고 있던 모든 정보를 말함. “승계인”이란 제23조의5에 따라 이용자가 자신의 디지털 유산의 관리권(정보의 보존·삭제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승계하도록 지정한 사람을 말함(제2조 제1항 제14호 및 제15호)	• 디지털 유산 정의 확대 • 이용자의 사전 지정 (신탁 관리인 및 디지털 유산 관리 방법)을 우선시

대표 발의자 (발의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비고
허은아 의원 등 10인 (2023. 4.25)	있음 •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가 이용 약관상 기간 접속하지 않거나, 이용자 사망 또는 실종 등의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해당 계정을 휴면계정으로 설정하고, 해당 이용자의 디지털 유산을 이용자가 사전에 정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자신의 계정에 접속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자의 사망 또는 실종 등의 사유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정을 휴면계정으로 설정할 수 있음(제23조의5)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약관에서 별도의 보존 기한과 삭제 방침을 밝히고 이용자가 이에 동의한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제23조의5를 적용하지 않음(제23조의6)	
정준호 의원 등 10인 (2025. 2.11.)	• 디지털 유산의 승계 및 관리에 관한 제도 마련을 통해 재난 수습, 추모 등에 필요한 디지털 정보를 정해진 절차와 테두리 안에서 확인하도록 함	•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상속인의 요청시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다만, 이용자가 사전에 해당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상기의 내용에 대해 제44조의11 신설	• 신탁 관리인의 범주를 상속인으로 축소 • 이용자의 디지털 유산을 상속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기본값

각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소위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안(2010. 7. 12)

유기준 의원 등 16인은 이용자 사망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사망자 개인정보에 관한 목록을 상속인에게 제공하고, 상속인 요청시 사망자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필요한 보호조치 등을 하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 개정안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검토 의견(2011. 6)은 다음과 같다. 사망자 개인정보의 유출 및 도용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개정안이 법제화되기 위해서는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사망자의 개인정보가 상속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가 우선 필요하다.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사망자의 개인정보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는지는 사망자의 자기정보통제권 및 통신비밀 침해 여부, 재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콘텐츠의 기준을 일반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법 체계적인 측면에서 개정안이 법제화되면 「정보통신망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사망자까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표 2-9〉 유기준 의원 대표발의안(2010. 7. 12)에 대한 주요 검토 의견

-
- 개정안이 법제화되면 상속인이 요청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사망자 개인정보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할 의무를 가지게 되므로 사망자 개인정보의 유출 및 도용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
 - **(상속가능성)** 개정안이 법제화되기 위해서는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사망자의 개인정보가 상속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함
 - － 상속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사망자가 남긴 ‘이메일이나 게시물 등’의 콘텐츠를 일괄하여 모두 상속 가능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사망자의 콘텐츠 중에서 어떤 콘텐츠가 일신 전속적이지 않고 재산성을 지녀 상속이 가능한지를 일일이 판단해야 할 것이나, 이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
 - **(헌법 및 타 법령과의 충돌 문제)**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사망자의 개인정보가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망자의 자기정보 통제권 및 통신 비밀 침해 여부, 재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콘텐츠의 기준을 일반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개정안이 법제화되더라도 사망자 개인정보에 대한 조치방법을 법령으로 명시하는 것은 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방안을 제약할 우려가 있어 검토가 필요함
 -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보호 범위로 명시하고 있어 개정안이 현행 법률의 규정 범위와 상이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정안이 법제화될 경우 「정보통신망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사망자까지로 확대하여야 함
-

2. 박대해 의원 대표발의안(2010. 7. 21)

박대해 의원 등 16인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사망시 상속인¹⁶⁾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제3자에 의한 사망자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16) 이용자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이용자가 사전에 지정한 자 등

해당 안의 경우, 이용자는 자신이 사망하거나 의식 불명 등의 경우 본인의 미니홈피 등을 미리 지정하는 자에게 관리하게 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지정된 자가 이용자의 미니홈피 등의 관리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상기의 내용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미니홈피 등을 이용하거나 관리하게 한 자 및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미니홈피 등을 이용하거나 관리한 자는 징역(5년 이하) 또는 벌금(5천만원 이하)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개정안에 대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검토 의견(2011. 6)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우선 검토 의견에서는 배우자 등이 사망한 이용자의 홈페이지 등을 관리하거나 사망자의 정보를 파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취지임을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사망자의 홈페이지 등을 배우자 등에게 관리하게 하면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될 우려가 있어 기존 법률¹⁷⁾과 충돌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배우자 등에게 사망자의 홈페이지 등을 관리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자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 및 사생활 침해 여부에 대한 자의적 판단 등이 우려되며, 성격·특성에 따라 계정을 타인에게 이전하기 어려운 서비스가 존재할 수 있어 이를 일괄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이용자가 생전에 관리자를 지정하더라도 어느 범위까지 관리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판단하면 또 다른 사생활 침해 문제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사업자 자의적 판단 등이 우려하고 있다.

이 외에도 법 체계적인 측면에서 개정안이 법제화될 경우 「정보통신망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사망자까지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하였다.

17)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통제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및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보장한 「통신비밀보호법」 등

〈표 2-10〉 박대해 의원 대표발의안(2010. 7. 21)에 대한 주요 검토 의견

-
- 개정안은 사망한 이용자의 홈페이지 등을 배우자 및 사전에 지정한 자 등을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사망자의 개인 홈페이지 등에 대한 제3자의 관리)** 사망자의 홈페이지 등을 배우자 등에게 관리하도록 할 경우,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될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통제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및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보장한 「통신비밀보호법」과 충돌할 우려가 있음
 - － 배우자 등에게 사망자의 홈페이지 등을 관리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사망자의 홈페이지를 사업자가 전부 모니터링하게 됨으로써 또 다른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생활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할 우려도 있음
 - － ‘이용자가 사망한 후 개인의 홈페이지 등이 어떻게 처리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참여자의 46%가 ‘폐쇄하는 것이 좋다’고 답변하였음을 고려할 때, 사망자의 의지와 관계 없이 일괄적으로 사업자와 사망자의 배우자 등에 의해서 관리 여부를 결정 짓도록 법제화하는 것은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
 - **(이용자 사망시 본인 홈페이지에 대한 관리자 지정)**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 성격·특성에 따라 계정을 타인에게 이전하기 어려운 서비스가 존재할 수 있어 이를 일괄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곤란
 - － 이용자가 생전에 관리자를 지정하더라도 어느 범위까지 관리하도록 할 것인지 여부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판단하게 되어 있어, 또 다른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사생활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할 우려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
 - － 또한, 관리자를 지정하는 방법뿐 아니라 사망 후 해당 홈페이지의 폐쇄 여부, 관리범위의 지정 등 사후(死後) 처리절차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기정보결정권을 보장할 필요
 - －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보호 범위로 명시하고 있어 개정안이 현행 법률의 규정 범위와 상이한 측면이 있으므로, 개정안이 법제화될 경우 「정보통신망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사망자까지로 확대하여야 할 것임
-

3. 김금래 의원 대표발의안(2010. 9. 9)

김금래 의원 등 15인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상속인¹⁸⁾이 사망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사망자의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18) 이용자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이용자가 사전에 지정한 자 등

해당 안은 이용자가 사망하는 경우 대법원장은 사망신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¹⁹⁾에게 이용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통보하도록 하고, 이 통보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망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안에 대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2011. 6).

우선 해당 안을 배우자 등이 사망한 이용자의 홈페이지 등을 관리하거나 사망자의 정보를 파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사망자의 홈페이지 등을 배우자 등에게 관리하게 하면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될 우려가 있어 기존 법률²⁰⁾과 충돌할 수 있다.

또한, 배우자 등에게 사망자의 홈페이지 등을 관리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자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 및 사생활 침해 여부에 대한 자의적 판단 등이 우려된다.

이밖에 사망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관리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자기정보통제권 침해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망자의 정보통신서비스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사망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면 사망자 정보의 오남용 및 사생활 침해 문제 발생이 우려된다.

〈표 2-11〉 김금래 의원 대표발의안(2010. 9. 9)에 대한 주요 검토 의견

-
- 개정안은 배우자 등이 사망한 이용자의 홈페이지 등을 관리하거나 사망자의 정보를 파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사망자의 개인 홈페이지 등에 대한 제3자의 관리)** 사망자의 홈페이지 등을 배우자 등에게 관리하도록 할 경우,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될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통제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및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보장한 「통신비밀보호법」과 충돌할 우려가 있음
-

19)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20)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통제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및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보장한 「통신비밀보호법」 등

-
- 배우자 등에게 사망자의 홈페이지 등을 관리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사망자의 홈페이지를 사업자가 전부 모니터링하게 됨으로써 또 다른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생활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할 우려도 있음
 - '이용자가 사망한 후 개인의 홈페이지 등이 어떻게 처리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참여자의 46%가 '폐쇄하는 것이 좋다'고 답변하였음을 고려할 때, 사망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사업자와 사망자의 배우자 등에 의해서 관리 여부를 결정 짓도록 법제화하는 것은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
 - (사망자의 통보 및 개인정보의 파기) 사망자의 정보통신서비스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사망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자가 사망자 정보를 오·남용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또한, 사망자가 남긴 게시물 또는 기록 등을 일괄적으로 파기하도록 법령으로 명시하는 것은 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방안을 제약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4. 김장실 의원 대표발의안(2013. 5. 22)

김장실 의원 등 12인은 디지털 유산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소유와 관리 권한을 상속인이 승계받게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용자가 생전에 획득한 게임 아이템, 작성한 게시물, 관리한 미니홈피·블로그 등을 디지털 유산이라 하고, 그 소유 및 관리 권한의 승계에 관한 규정과 제3자의 이의 제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해당 개정안은 이용자가 사망하기 전에 디지털 유산의 처리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지정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지정한 처리 방법에 따라 디지털 유산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토 의견(2013. 12)을 내었다. 민법상 상속 규정이나 기타 현행 개별법의 규정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경우를 가정하여 디지털 유산의 법적 처리를 원활하게 하는 근거 규정으로서의 입법 취지는 인정한다. 그러나 민법에서의 상속 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을 별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또한 디지털 유산의 범위 등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명시하였다.

〈표 2-12〉 김장실 의원 대표발의안(2013. 5. 22)에 대한 주요 검토 의견

-
- 개정안은 민법상 상속 규정으로 해결될 수 없거나 기타 현행 개별법의 규정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경우를 가정하여 디지털 유산의 법적 처리를 원활하게 하는 근거 규정으로서의 입법 취지가 인정됨
 - ①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관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이 ‘디지털유산’으로 분류하고 있는 권리 중 ‘게임물을 이용한 획득 결과물’ 등은 상속 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별도의 법률로써 상속 또는 승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할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② ‘디지털유산’은 새로운 개념으로 아직까지 그 범위가 확립되지 않았으며, 기술 발전 및 서비스 변화에 따라 그 유형 및 승계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이를 법률에 규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필요
 - 개정안은 안 제44조의11 제1항에서 디지털유산의 개념 규정과 함께 범위를 설정하면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관 중(제3호)을 명시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제3자의 지배영역에 당해 정보가 존재’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디지털유산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에 한정하지 않고 다소 넓은 범위로 규정함으로써, 디지털유산의 개념을 정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5. 손인춘 의원 대표발의안(2013. 7. 10)

손인춘 의원 등 13인은 이용자가 자신의 사망 이후 개인정보 처리 방법을 지정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 사망시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대한 이용자 본인 의사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처리하게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는 이용자가 자신의 사망 이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하여 사망에 따른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 방법을 지정할 수 있게 한다. 해당 안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사망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대한 이용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고 사망시 지정한 방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한다.

상기 입법안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다음과 같이 주요 검토 의견(2013. 12)을 명시하였다.

이용자가 자신의 사망 이후 개인정보 처리방법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은 크다고 판단되나, 현행 법령상으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사망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예를 들어, 서비스 제공자가 국가기관으로부터 가입자의 사망, 실종신고 등의 행정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수집 정보의 보안 유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표 2-13〉 손인춘 의원 대표발의안(2013. 7. 10)에 대한 주요 검토 의견

-
- 이용자가 자신의 사망 이후 개인정보 처리 방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 현행 법령상으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사망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필요함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국가기관으로부터 각종 행정정보(가입자의 사망·실종신고 등)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둠으로써, 이용자의 신분변동사항이 즉시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 수집 정보의 보안유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수집 정보는 단순히 가입자의 사망 여부 등으로 그 자체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정보로 한정되어야 할 것임
-

6. 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안(2022. 7. 11)

황보승희 의원 등 11인은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민법」에 따른 상속인이 디지털 유산의 관리 권한을 승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 유산 권리 권한 승계에 관한 규정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해당 개정안에 대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검토 의견(2022. 9)은 다음과 같다.

민법상 상속에 관한 규정으로 상속이나 승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이 존재하므로 개정안과 같이 디지털 유산의 승계 등을 규정하는 것은 그 의미가 클 것으로 보며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한다.

다만, 몇 가지 사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선, 디지털 유산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에 보다 구체화한 정의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디지털 유산에 포함된 제3자의 개인정보가 해당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상속인에게 승계될 가능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디지털 유산의 개념이 상속·관리가 가능한 개념인가에 대한 사전적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디지털 유산에 대한 권한 범위에 대한 검토이다.

디지털 유산에 포함된 제3자의 개인정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제3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디지털 유산 관리 권한에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지는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권과 재산에 관한 관리의무가 모두 포함되는지는 구체적인 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법적 공백 발생 가능성 및 상속인의 이용 권한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표 2-14〉 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안(2022. 7. 11)에 대한 주요 검토 의견

-
- 민법상 상속에 관한 규정으로 상속이나 승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영역이 존재하므로 개정안과 같이 디지털 유산의 승계 등을 규정하는 것은 그 의미가 클 것으로 보며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하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 ① 개정안에서의 “디지털 유산”을 “정보통신망에서 해당 이용자가 작성하거나 보관 중인 정보”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디지털 유산의 개념이 모호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디지털 유산에 대해 비록 현재까지 합의된 개념은 없다 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에 보다 구체화된 정의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② 디지털 유산의 승계를 규정하는 경우 해당 디지털 유산에 포함된 제3자의 개인정보가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상속인에게 승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
- 또한, 이용자(피상속인)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소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
 - ③ 디지털 유산의 개념이 모호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에 비추어 개정안에서 정의되는 디지털 유산의 개념이 상속·관리가 가능한 개념인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
 - ④ 디지털 유산 승계 시 디지털 유산에 포함된 제3자의 개인정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제3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디지털 유산 관리 권한에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지는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권과 재산에 관한 관리의무가 모두 포함되는지는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므로, 추후 사회적인 공론화를 거쳐 디지털 유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승계의무를 부과하고 현실에서 디지털 유산을 관리하는 “정부, 공공기관, 학교 등”은 제외하고 있어 디지털 유산 승계에 대한 법적인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승계되는 권한 범위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인격이 발현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이용에 제한을 두거나 기간의 제한을 두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7. 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안(2023. 4. 25)

허은아 의원 등 10인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사망한 이용자의 계정을 휴면계정 전환 및 사전 지정 방식으로 처리를 가능하게 하게 하도록 디지털 유산의 처리 관련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해당 안은 사업자 약관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용자가 계정 접속을 하지 않거나 사망이나 실종 등의 사유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휴면계정으로 설정하고, 사전에 이용자가 설정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주요 검토 의견(2023.12)을 명시하였다.

디지털 유산 또는 그 관리권의 승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디지털 유산의 승계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한다.

다만, 다음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첫째, 이용자가 특정 기간 계정을 접속하지 않는 경우와 이용자의 사망 또는 실종의 경우가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둘째, 이용자 계정에 보관·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 승계가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넷째, 『민법』상 상속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해당하면 발생 가능한 문제점뿐 아니라, 마지막으로 승계에 대한 범위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판단하였다.

〈표 2-15〉 허은아 의원 대표발의안(2023. 4. 25)에 대한 주요 검토 의견

-
-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이용자가 자신의 계정에 보관·관리하는 정보나 정보 관리권의 승계에 대한 규정이 없음
 - ‘디지털 유산’의 승계는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던 권리가 이용자의 사망을 이유로 타인에게 이전된다는 점에서 민법상 상속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민법상 상속은 기본적으로 재산 처분의 자유를 사후에도 미치도록 하는 것으로, 제1005조는 상속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임을 명시하고 있어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디지털유산의 경우 현행 법상으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음
 - 이용자가 남긴 정보의 재산적 가치 유무에 관한 판단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설령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고인을 추모할 권리 등을 이유로 디지털유산 또는 그 관리권의 승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디지털 유산의 승계에 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하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① 디지털유산의 승계 사유로 ‘이용자가 특정 동안 자신의 계정에 접속하지 아니한 경우’와 ‘이용자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가 있는 경우’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
-

-
- 개정안은 이용자의 사망 또는 실종 등의 사유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자신의 계정에 접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계정을 휴면계정으로 설정하고 해당 이용자의 디지털유산을 이용자가 사전에 정한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단순히 이용자가 서비스를 장기간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계인에게 이용자의 정보가 승계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② 이용자가 자신의 계정에 보관·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승계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유산의 승계를 위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는 매개자의 전달행위가 필요한데, 온라인상의 정보의 경우 그 유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도 접근 및 전달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 모든 정보의 승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③ 디지털 유산의 승계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보관·관리하고 있던 정보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각호에 따른 불법정보로서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민감정보와 같이 공개될 경우 타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러한 정보의 경우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계정에 보관·관리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이용약관을 통해 모두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가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법령을 통해 승계의 대상이 되는 디지털유산의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④ 개정안에 따른 디지털유산의 승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속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민법」 상 상속과는 별개의 절차인 바, 디지털유산이 「민법」 상 상속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승계인과 「민법」 상 상속인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정보를 보존·삭제할 권리를 갖는 자와 정보에 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갖는 자가 달라지는 바, 정보에 대한 관리권과 정보에 대한 포괄적 권리의무 사이의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 ⑤ 승계인의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승계인의 정의와 관련하여 미성년자나 복수의 승계인이 지정되는 경우 등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 (기타) ‘휴면계정’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 등
-

8. 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안(2025. 2. 11)

정준호 의원 등 10인은 재난 수습, 추모 등에 필요한 디지털 정보를 정해진 절차와 테두리 안에서 확인하도록 하려고 디지털 유산의 승계 및 관리에 관한 제도를 신설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본 개정안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다만, 이용자가 사전에 해당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해당 안에 대해 공식적인 검토 의견은 아직 공표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용자의 디지털 유산을 상속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기본값이 되도록 법으로 정한다는 점에서 이용자가 원치 않는 과도한 수준의 사적이고 개인적인 정보, 제3자의 개인정보가 상속인에게 이전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우려가 있다.

디지털 유산의 처리 및 이전의 법제화와 관련하여 꾸준히 발의안이 제시됐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논의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유산의 정의, 신탁 관리인의 지정에 관한 부분부터 발의안 간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더하여, 이용자의 사망 이전 의사 표명 가능성 고려 여부,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서비스 약관에 대한 존중 정도, 기존 법제와의 충돌 가능성 등 중장기에 걸쳐 검토 및 의견 수렴이 필요한 부분이 간과된 채 산발적인 발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제3절 주요 기업별 디지털 유산 관련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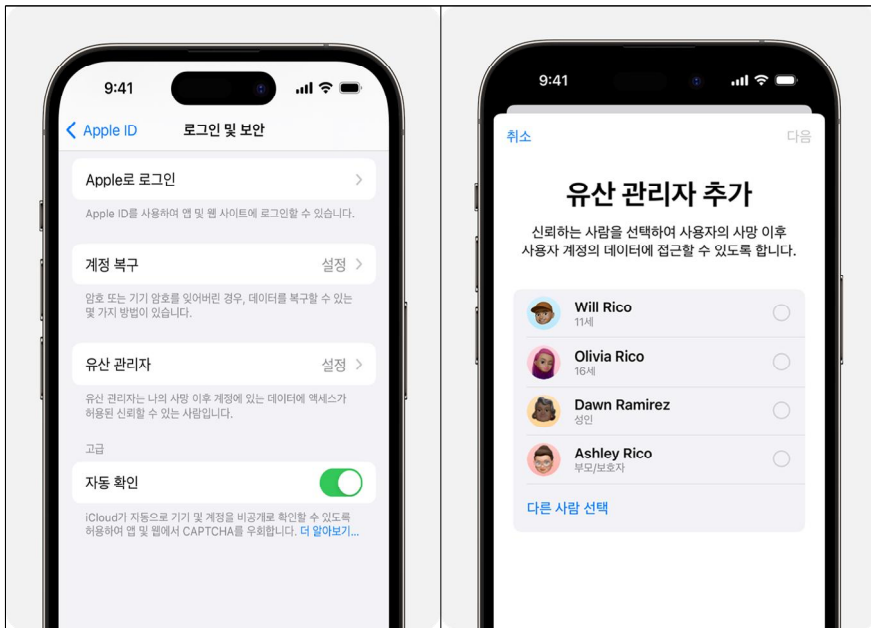
1. 해외 주요 기업

가. 애플(Apple)

2021년 말 Apple은 이용자가 지정한 사람이 사진, 연락처 등 특정 데이터를 간단히 추출할 수 있는 계정을 설정하는 옵션을 추가하여 이용자는 사망한 후 자신의 Apple 계정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산 관리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유산 관리자가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에는 사진, 메시지, 메모, 파일, 다운로드한 앱, 기기 백업 등이 포함되나, 이용자가 자신의 Apple ID로 구매한 영화, 음악, 도서 또는 구독과 같은 특정 정보와 결제 정보, 암호 및 패스키처럼 키체인에 저장된 데이터에는 접근할 수 없다.

[그림 2-1] Apple ID의 유산 관리자 지정 과정 예시



출처: Apple Support, <https://support.apple.com/ko-kr/102631>

Apple ID에 유산 관리자를 추가하려면 ① 특정 버전 이상의 OS 구동 및 Apple ID 로그인 상태, ② ID의 이중 인증 작동, ③ 13세 이상(국가별로 상이)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이용자가 사망한 후 유산 관리자가 접근 권한을 요청하려면 접근 키와 사망 진단서가 필요하다.

생전에 이용자가 유산 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일부 국가에서는 법원 명령서 또는 기타 법적 서류를 사용하여 접근 권한을 요청할 수 있다.²¹⁾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에서는 법원 명령서 대신 대체 문서 및 절차가 허용된다.

나. 구글(Google)

Google은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무능력해질 경우 이용자의 Google 계정을 관리하도록 선택할 수 있는 대상(비활성 계정 관리자, “Inactive Account Manager”)을 지정할 수 있다.²²⁾ 2013년 4월, Google은 세계 최초로 이용자가 사망한 후 지정한 사람에게 데이터를 상속 또는 삭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비활성 계정 관리자는 이용자의 계정에 접근할 수 있으며, 데이터 다운로드, 연락처 관리, 이메일 보기와 같은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 모든 민감한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Google 계정 로그인 후 계정 관리 메뉴에서 ‘디지털 유산에 대한 계획 세우기’와 ‘비활성 계정 관리자’를 통해 최대 10개까지 유산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용자의 계정이 지정된 시간 동안 비활성 상태일 때만 ‘비활성 계정 관리자’의 연락처로 알림을 받는다.

연락처에게 비활성 계정만 알리도록 선택한 경우 연락처는 설정하는 동안 작성한 제목과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받게 되며, 신뢰할 수 있는 연락처와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선택한 경우 이메일에는 공유하도록 선택한 데이터 목록과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기 위해 따라갈 수 있는 링크가 추가로 포함된다.

21) Apple Support, ‘사망한 가족 구성원의 Apple 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을 요청하는 방법’, <https://support.apple.com/ko-kr/102431>

22) Google Support, ‘About Inactive Account Manager’, <https://support.google.com/accounts/answer/3036546?hl=en>

[그림 2-2] Google의 비활성 계정 관리자 지정 과정 예시

Google Account

← Inactive Account Manager

Plan what happens to your data if you can't use your Google Account anymore

Decide when Google should consider your Google Account inactive

We will only trigger the plan that you set up if you haven't used your Google Account for some time. [Learn more](#)

Tell us how long we should wait before we do so.

After 6 months of inactivity

We'll contact you 2 months before this time is up

Before we take any action, we'll contact you multiple times by SMS and email.

We'll contact you by SMS on this number

We'll contact you on this email

[MANAGE CONTACT EMAIL](#)

We'll also contact you on your recovery email

[MANAGE RECOVERY EMAIL](#)

[NEX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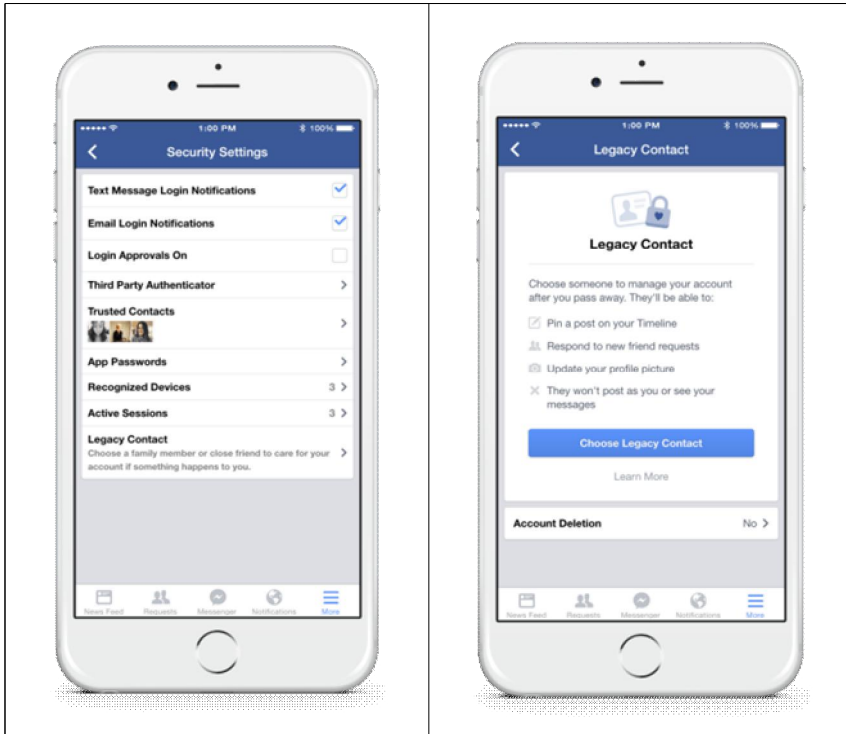
Choose who to notify and what to share

다. 메타(Meta)

2015년 2월, Meta는 Facebook에서 이용자 사망시 계정을 관리할 수 있는 대상(유산 관리자, "Legacy Contact")을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이용자의 사망 사실을 알리면 Facebook은 해당 이용자의 계정을 추모하고 유산 관리자가 추모나 특별한 메시지를 공유하기 위해 상단에 노출되는 게시물을 작성할 수 있고 친구 요청이나 프로필이나 커버 사진 등을 업데이트할 수 있다. 유산 관리자는 사망한 이용자 계정으로 로그인할 수 없으며, 추모 메시지 작성이나 상단 노출 게시물이거나 프로필 변경과 같이 일부 기능에 대한 접근만 가능하다.

유산 대상이 추가되지 않으면 사망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법원은 사망한 이용자의 소셜미디어 계정의 관리자를 임명하거나 사망한 이용자의 Facebook 계정에 대한 유산 연락처로 개인을 추가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림 2-3] Facebook 유산 관리자 지정 과정 예시



출처: Meta, 'Adding a Legacy Contact',
<https://about.fb.com/news/2015/02/adding-a-legacy-contact/>

Instagram에서도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고인의 계정으로 판단되면 추모 계정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고인의 직계 가족이면 해당 계정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²³⁾ 추모 계정은 부고나 언론 기사 등 사망 증명된 후 전환이 가능하며, Instagram 해당 계정에 '추모'라는 단어 표시되고, 고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계정 보호조치가 설정된다.

Instagram 정책상 누구도 사망한 이용자 계정에 로그인할 수는 없다. 다만, 사망한 이용자 계정에 대해 추모 계정 표기와 계정 삭제만 가능하다. 사망한 이용자의 직계 가족은 삭제 요청시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① 고인의 출생증명서, ② 고인의 사망

23) Instagram, 'Instagram에서 고인의 계정 신고하기',
<https://help.instagram.com/264154560391256>

증명서, ③ 요청자가 현지 법에 따라 고인을 대리하거나 고인의 유산 처리를 주관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엑스(X, 구 트위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X(구 Twitter)는 사망한 이용자의 계정을 제3자가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은 없으나, 검증된 직계 가족이 해당 계정을 비활성화(삭제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검증된 직계 가족이나 권한자와 협력하여 계정을 비활성화시킬 수 있다.²⁴⁾

2. 국내 주요 기업

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국내 인터넷 서비스 기업 중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의 회원사인 경우 대부분 사망자의 계정 및 게시물 등 디지털 유산 정책과 관련하여 KISO의 정책 규정을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하였다.

KISO 정책 규정을 살펴보면, 2014년 10월 22일 정책위원회 합의에 따라 「사망자의 계정 및 게시물 관련 정책」을 신설하였다. 계정 접속권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제공하지 않으나, 피상속인의 계정 중 경제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정보(사이버 머니 등)는 관계 법령 및 약관에 따라 상속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상속인은 ① 삭제를 요청하는 계정이 피상속인의 계정이라는 사실, ②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 ③ 요청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소명하면 피상속인의 계정 폐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는 공개된 콘텐츠를 별도의 매체에 복사하는 백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4) X, ‘How to contact X about a deceased family member’s account’,
<https://help.x.com/en/rules-and-policies/contact-x-about-a-deceased-family-members-account>

제3절 사망자의 계정 및 게시물 관련 정책

제27조(목적)

본 절은 인터넷 이용자가 사망할 경우 생전의 이용한 계정 및 게시물 등의 처리 방식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8조(계정)

- ① 회원사는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계정 접속권 등을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한다.
- ② 1항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계정 중 사이버머니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정보의 경우 관계 법령 및 약관에 따라 이를 상속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29조(계정 폐쇄 요구 등)

- ①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업자에게 소명하여 피상속인의 계정 폐쇄를 요청할 수 있다.
 1. 삭제를 요청하는 계정이 피상속인의 계정이라는 사실
 2.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
 3. 요청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인이라는 사실
- ② 사업자는 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상속인에게 게시물 등 공개된 콘텐츠를 별도의 매체에 복사하여 주는 백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백업이 가능한 구체적인 게시물의 범위는 서비스제공자가 기술적, 경제적인 현실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출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https://www.kiso.or.kr/>

나. 네이버

네이버는 회원의 계정 정보(아이디/비밀번호)를 일신전속적 정보로 보아 유족의 요청이 있는 경우라도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²⁵⁾ 계정 정보에 해당하는 비밀번호는 복호화할 수 없는 방식으로 암호화되므로 네이버도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네이버의 디지털 유산 관련 정책에서 명시하고 있다.

다만, 유족 등 정당한 권리자의 요청 시, 고인과의 관계를 확인한 후에 요청에 따라 회원 탈퇴를 처리하고 있다. 이밖에 유가족을 위해 백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개 블로그 등 계정에 로그인하지 않고서도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개된 자료’에

25) 네이버, ‘디지털 유산 관련 정책’,

https://privacy.naver.com/policy_and_law/digital_heritage?menu=policy_service_manage_digital_heritage

대해서는 유가족에게 가족증명서류, 동의서 등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백업 서비스를 제공하며, 생전의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비공개(Private) 이용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표 2-17〉 네이버의 디지털 유산 관련 정책

디지털 유산 관련 정책

고인(故人)의 프라이버시 보호까지 생각합니다.

디지털 유품의 이해

‘디지털 유품’은 사망한 사람이 남긴 모든 형태의 디지털 자료로 정의할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는 사망한 개인이 생존 당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서비스 이용 내역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인화 서비스, SNS 등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사진, 글, 이메일, 동영상 등 고인(故人)의 흔적도 다양해졌는데 이러한 디지털 유품은 크게 아이디, 비밀번호 같은 ‘계정정보’, 이메일 내용과 같은 ‘이용정보’, 카페 및 블로그 등에 공유한 글, 사진, 영상 등과 같은 ‘공개정보’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분류는 기준을 정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유품에 대한 논란

디지털 유품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생전에 남겨 놓은 데이터를 열람, 또는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권리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디지털 정보에는 추상적 권리로 저작권이 발생하거나 특허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특허 사상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디지털 정보 자체도 재산권적 성격이 있다고 볼 것인지를 두고 학계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편 언론에서는 정보 자체의 법률적 성격에 지나치게 집중하기 보다는 정보 자체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및 경제, 사회, 기술적 변화에 따른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널리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디지털 정보를 상속할 수 있는가?

디지털 정보의 상속성에 대해서 한편에서는 ‘디지털 유품은 민법에서 규정하는 일신전속적 권리로써, 일신전속권은 일반적으로 상속이 제한되기 때문에 디지털 유품 역시 상속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디지털 유품이 반드시 일신전속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만약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향수상의 일신전속권과는 달리 행사상의 일신전속권 중에는 상속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 유품 역시 상속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유품의 대상을 계정정보 및 계정이용권, 전자우편 정보, 기타 콘텐츠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상속 여부를 달리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특히 계정정보 및 계정이용권에 대해서는 일신전속적 성격을 인정하여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상속권 vs 프라이버시권?

고인을 그리워하는 유가족들이 고인의 디지털 유품을 요청하거나 고인에 대한 추모 등을 이유로 디지털 유품 중 일부가 제3자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예: 고인이 생전에 운영하던 '미니 홈페이지'를 그의 가족이 '추모' 성격으로 운영하는 경우)

하지만 상속권, 추모할 권리, 알 권리 등을 이유로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암묵적으로 허용될 경우, 본래의 의도를 벗어나 고인의 정보 도용 및 비밀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현행 법 상으로 그 정당성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갖는 상속권과 이미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가지고 있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 가운데 어떤 것을 더 존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네이버의 디지털 유산 정책

네이버는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와 같은 계정정보를 일신전속적 정보로 보아 유족의 요청이 있는 경우라도 이를 유족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정정보에 해당하는 비밀번호는 복호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암호화 되기 때문에 네이버조차도 이를 알 수 없는 점까지 고려하였습니다.

다만, 유족 등 정당한 권리를 갖는 분이 요청하시는 경우 고인과의 관계를 확인한 후에 요청에 따라 회원탈퇴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공개 블로그 등 계정에 로그인하지 않고서도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개된 자료'에 대해서는 유가족의 편의 제공을 위해 유가족에게 가족증명서류, 동의서 등의 확인절차를 거친 후 백업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유산 관련 네이버의 정책

공개(Public) 성격의 이용정보(예: 블로그 공개글)는 정당한 권리를 보유한 유족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요청에 따라 백업을 지원합니다.

생전의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비공개(Private) 이용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아이디 및 비밀번호와 같은 '계정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네이버는 고인의 사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사망으로 일정 기간 서비스 이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자사의 '휴면 정책'에 따라 해당 계정에 대해 접근 제한 조치 등의 보호조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인이 아닌 일반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네이버는 장기간 로그인 하지 않으신 경우 휴면 알림 메일, SMS를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출처: 네이버, '디지털 유산 관련 정책',

https://privacy.naver.com/policy_and_law/digital_heritage?menu=policy_service_manage_digital_heritage

다. 카카오

카카오는 고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카카오 계정 정보를 비롯하여 카카오톡 대화, 친구내역 등의 비공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²⁶⁾ 카카오톡 대화의 경우, 고인뿐만이 아니라 대화 상대방의 프라이버시까지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한 정책임을 ‘카카오 프라이버시센터’의 ‘고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안내를 통해 밝히고 있다.

그러나 유족이 원하는 경우 고인 계정의 미사용 모바일 교환권, 잔여 선불전자 지급수단(유상)과 같은 금전으로 환산이 가능한 권리에 대해서는 환불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밖에 고인의 카카오톡에서 추모 프로필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고인의 프로필 사진 옆에 국화꽃 아이콘이 생성되고, 1:1 채팅방을 통해 추모 메시지를 보낼 수 있으며, 전달된 메시지는 발신자만 확인할 수 있어 개인적인 추모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추모 프로필 전환 과정에서 고인의 개인정보나 대화 내역 정보 등은 유가족을 포함해 다른 이에게는 제공되지 않는다.

〈표 2-18〉 카카오의 디지털 유산 관련 정책

2. 고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카카오는 고인의 프라이버시와 유족을 헤아리는 디지털 유산 정책을 고민합니다.

이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계정, 메일이나 게시글 등 데이터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용자가 사망하여 고인이 된 경우에 계정 정보를 포함한 디지털 데이터의 처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살아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보호 대상으로 하며, 고인의 디지털 정보가 상속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계정 정보, 사생활정보, 비공개 정보 등은 일신전속권¹⁾에 해당하여 상속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카카오는 고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유족을 고려하여 고인의 디지털 정보를 다음과 같이 보호합니다.

고인의 계정 정보 및 사생활 정보, 비공개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카카오는 고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카카오 계정 정보를 비롯하여 카카오톡 대화, 친구 내역 등의 비공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26) 카카오, ‘고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https://privacy.kakao.com/policy?lang=ko#digitalHeritage>

고인이 계정 정보를 제공할 경우 생전에 공개되지 않았던 고인의 사생활 정보나 비공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특히 카카오톡 대화의 경우 고인뿐만이 아니라 대화 상대방의 프라이버시 까지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일신전속권에 해당하지 않는 디지털 정보에 대해서는 유족의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고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이 없거나 낮은 디지털 정보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유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유족이 원하는 경우 고인 계정의 미사용 모바일 교환권, 잔여 선불전자지급수단(유상)과 같은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권리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공개형 게시판 서비스에 대해서는 유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된 게시물의 백업을 지원²⁾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고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생전에 공개하지 않았던 비공개 게시물에 대해서는 백업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추모 프로필 기능을 제공합니다.

고인을 더 오래 기억하고 애도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추모 프로필 기능을 제공합니다.

추모 프로필로 전환되면 고인의 휴대폰을 해지하거나 휴면 상태가 되더라도 카카오톡 프로필이 ‘알 수 없음’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고인 프로필 사진 옆에 국화꽃 아이콘이 생성되고, 1:1 채팅방을 통해 추모 메시지를 보낼 수 있으며, 전달된 메시지는 발신자만 확인할 수 있어 개인적인 추모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추모 프로필 전환 과정에서 고인의 개인정보나 대화 내역 정보들은 유가족을 포함해 다른 이에게는 제공되지 않으며, 추모 프로필 전환 전 사용자가 설정한 멀티 프로필 역시 유지됩니다.

카카오는 고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 법규,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하여 고인의 디지털 유산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 1) 본인에게 귀속되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의미함
- 2) 서비스 환경 및 기술적,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공개된 게시물 백업 제공이 제한될 수 있음

출처: 카카오 ‘고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https://privacy.kakao.com/policy?lang=ko#digitalHeritage>

라. 최근 네이버 및 카카오의 대응 사례

2024년 12월에 발생한 무안공항에서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유족들은 원활한 장례 절차 진행을 위해 사망자의 온라인 계정에 등록된 지인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네이버와 카카오 등에 요구한 바가 있다. 갑작스럽게 부고를 보내야 할 시점에 고인의 주변인들에게 연락할 방법이 가로막혔기 때문이며, 이에 정부도 관련 기업과 지원방안을 검토하였다.

2025년 1월 7일, 네이버와 카카오는 고인의 프라이버시, 제3자 개인정보 침해와 기술적 이유로 인해, 희생자의 회원 정보(아이디/비밀번호 등)를 유가족에게 제공할 수 없음을 밝히며 초기 대응하였다.

그러나, 2025년 1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카카오는 희생자 카카오톡 계정의 지인 연락처 정보를 유족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하였다.²⁷⁾ 이는 기업의 디지털 유산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원칙이나 범위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라. 게임업체

넥슨, 엔씨소프트 등 일부 게임사들은 친족 관계 증빙을 통해 계정 명의 이전을 지원하고 있다.²⁸⁾

엔씨소프트의 경우, 사망자에 대한 ‘계정 명의변경 동의서’를 담당자에게 보내면 검토 후 계정 명의 이전(상속)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²⁹⁾ ‘계정 명의변경 동의서’에는 사망자의 정보와 계정, 명의변경 대상자와의 관계 증명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림 2-4] 엔씨소프트의 사망자 계정의 명의 이전 절차

사망자 계정의 명의 이전을 위한 계정(ID) 명의변경 동의서는 무엇인가요?

사망자 명의 계정에 대해 명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이전 받을 대상자와 포기자는 계정(ID) 명의변경 동의서를 접수해주시야 합니다.

이 때 접수가 되어야 하는 계정(ID) 명의변경 동의서와 서류 접수 방법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7) 한경(2025. 1. 9.), “삼성·애플·카카오, 무안 제주항공 사고 유족에 희생자 지인 정보 제공”,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1096363g>

28) 이코리아(2024. 11. 12.), “글로벌 게이머 ‘디지털 콘텐츠 소유권’ 논쟁 확산... 국내는?”, <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382>

29) 게임동아(2024. 6. 13.), “게임은 유산이 될 수 있을까?”, <https://game.donga.com/112559/>

4. 서류 접수 후 당일 업무 시간(09:00~18:00/주말, 공휴일 제외) 내 연락이 없을 경우 고객센터 또는 문의 접수를 부탁드립니다.

계정(ID) 명의변경 동의서(사망자)

본 서류에 기재된 계정 포기 대상자들은 아래 계정에 대한 일체의 관리와 포기를 포기하고 이를 명의변경 대상자에게 이전하는 것에 동의하며, 향후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익제기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합니다.

【계정 명의(XX)사망자 정보】

대상계명	성명	PlayNC 계정(ID)	생년월일	명의변경 대상자와의 관계

【계정 명의변경 대상자 정보】

성명	미리본 번호	PlayNC 계정(ID) (명의변경 대상자의 계정)	생년월일	전화번호

* 명의변경을 위해 필수사항: 미성년자: 친권, 양친가; 홀로자녀: 저당증, 부모님, 본인; PlayNC 회원: 가입 가능, 실적이야 합니다.

【계정 포기 대상자 정보 및 동의 확인】

성명	관계	생년월일	주소	날인/서명

년
월
일

명의변경 대상자가 현재 거주 중인 주소:

명의변경 대상자명: _____ (날인/서명)

주식회사 엔씨소프트 귀중

넥슨 또한 계정 상속을 지원하며, 가족 명의변경 동의서와 가족 관계 증명서를 제출하면 일촌과 이촌 범위 내에 계정 명의변경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³⁰⁾

– 52 –

넷마블의 경우, 2024년 6월 기준, 아직 계정 상속 시스템은 없으나 계정 명의자 및 상속관계 증명, 상속 관련 법적 근거 제시 등 정당한 상속권 보유를 증명하면 예외적으로 피상속인의 계정 내 게임 데이터를 상속인의 계정으로 이관해 주는 조치를 고객센터 차원으로 검토하고 있다.³¹⁾³²⁾

마. 가상자산거래소

일반적으로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사망자 계정에 예치된 자산은 상속 가능하며, 대부분 상속인의 계정으로 이전된다. 업비트는 업비트에 사망자(피상속인)의 계정이 존재하고, 해당 계정에 원화 또는 디지털 자산이 예치되어 있으면 상속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다.³³⁾ 사망자(피상속인)의 계정 보유 여부는 업비트 고객센터에 직접 서류³⁴⁾를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확인할 수 있다고 '상속 업무 처리 정책'에 명시하고 있다.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 진행 시 유효한 유언장이 필요하다.

제공 방식의 경우, 디지털 자산은 디지털 자산으로, 원화 자산은 원화 자산으로만 상속 처리가 가능하며, 상속 처리를 위해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디지털 자산과 원화 자산을 상속인의 업비트 계정으로 이전할 수 있다.

빗썸 또한 고객센터 사이트를 통해 사망자의 상속 절차에 관해 설명하고 있으며, '자산이동에 관한 회원 동의서' 등 제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31) 위의 출처와 동일

32) 2025년 2월 현재, 넷마블 고객센터에서 디지털 유산 관련 정책 부재

33) 업비트, '상속 업무 처리 정책', https://static.upbit.com/guide/inheritance_policy.pdf

34)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신분증의 사본, (사망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업비트 양식), 고객센터로 문의

〈표 2-19〉 업비트의 상속 업무 처리 정책

Upbit 상속 업무 처리 정책

업비트는 업비트에 사망자(피상속인)의 계정이 존재하고, 해당 계정에 원화 또는 디지털 자산이 예치된 경우 이에 관한 상속업무를 처리하실 수 있도록 협조를 해드립니다.

2. 사망자(피상속인)의 계정 보유 여부는 업비트 고객센터에 직접 내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시거나 해당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 상속인 신분증의 사본
 - － (사망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 등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업비트 양식으로, 고객센터로 문의)
3. 확인 결과 사망자(피상속인)의 계정이 존재하는 경우 반드시 업비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상속 관련 후속처리를 위한 절차와 필요서류에 대해 정확히 안내받으신 후 고객센터 내방 예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4. 상속인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피상속인의 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서류, 상속인의 신분증,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대표상속인 지정여부, 대리인 방문 여부 등에 따라 고객센터를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신분증, 사망진단서를 제외한 서류는 발급 받은지 3개월 이내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유언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5. 디지털 자산은 디지털 자산으로, 원화 자산은 원화 자산으로만 상속 처리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상속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1. 상속 처리를 위해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디지털 자산과 원화 자산을 상속인의 업비트 계정으로 이전해 드립니다.
 2. 상속 처리를 위한 고객센터 내방 전에 미리 상속인의 업비트 계정을 만들어 두시면 보다 신속한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3. 미성년자는 업비트 회원가입이 불가한바,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친권자의 업비트 계정으로 디지털 자산과 원화 자산을 이전해 드립니다.(이 경우 친권자 확인을 위한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6. 현행 법령상 디지털 자산의 가치 평가 방법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디지털 자산 및 원화자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 여부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나 거주지 관할 세무서 등에 별도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업비트는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 조회 시스템을 통해 관련 내역이 조회되지 않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이외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업비트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업비트, '상속 업무 처리 정책', https://static.upbit.com/guide/inheritance_policy.pdf

제3장 디지털 유산 법제화 논의

제1절 사업자 및 이용자 의견

1. 사업자 의견

디지털 유산 법제화 시 유산 관리인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대표적인 사업자 3사를 인터뷰하여 디지털 유산 관리 기조, 현행 관리 방식과 애로사항, 법·제도적 기준 또는 보호(면책 의무)가 필요한 영역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사업자 관점에서 현행 자율 대응의 한계와 향후 법제화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는 것이 목적이다.

3사 중 2개 사는 국내 대표 플랫폼사업자이며, 나머지 1개 사는 게임서비스 제공 사업자이다. 플랫폼사업자 2사는 SNS, 전자상거래, 메신저, 이메일, 콘텐츠 생성, 클라우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유산의 관리에 대해 신중하고 다층적인 입장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여 선정하였다. 게임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디지털 유산화할 자료의 폭이 상대적으로 정형화할 수 있는 사업자의 입장을 파악하기 위해 선정하였다.

가. 디지털 유산 관리 기조

두 주요 플랫폼사업자는 공통적으로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있다. 계정 자체는 이용자 본인에게 일신전속적인 권리로 간주하여, 사망 이후라도 계정 인계나 비공개 데이터 제공은 하지 않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이는 상속권과 프라이버시권이 충돌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생전에 고인이 명시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정보는 유족일지라도 접근을 제한해 고인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개된 디지털 콘텐츠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승계 조치를 허용하고 있다. 공개 블로그 글 등 공개자료는 유족 요청 시 백업 제공을 지원하고, 재무적 가치가 있는 포인트나 잔금 등은 상속 관계 증빙서류를 받은 경우 상속인에게 이전해주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유족 요청 시 계정 삭제(탈퇴)의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2014년경 마련된 KISO의 자율가이드라인에 기반한

것으로, 두 사업자 모두 해당 가이드라인을 채택해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유지해 왔다. 한 플랫폼사업자는 자체 프라이버시센터에 “고인 계정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게시하여 관련 법령과 절차를 투명하게 안내하고 있고, 다른 한 사업자도 고객지원 FAQ 등을 통해 “고인의 계정 및 데이터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지하고 있다. 세부 운영 형태에는 차이가 있으나 “고인의 사적 자료는 보호하고, 필요한 최소한만 처리한다는 점에서 두 플랫폼사업자의 기조는 일치한다. 최근에는 이용자 사전지정(opt-in) 제도를 도입하여 본인이 생전에 디지털 유산 처리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 사업자는 고인이 될 경우를 대비해 유산 관리 대리인을 지정하는 기능(예: 메신저 서비스의 사전 대리인 지정 및 추모 프로필 기능)을 이미 운영 중이며, 다른 사업자도 생전 지정형 상속인 제도 도입을 내부 검토 중이다. 이는 이용자의 사전동의와 의사 표시가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데이터 전달을 허용하자는 방향으로, 플랫폼사업자들의 기본 기조인 “본인의 결정 우선” 원칙과 맥을 같이 한다.

게임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기조: 게임 분야 사업자는 플랫폼과 달리 디지털 자산을 재산적 가치로 보고 상속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게임 계정에는 경제적 가치가 큰 아이템이나 캐릭터 자산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용자 사망 시 해당 계정을 가족 등에게 승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입장이다. 실제 이용자가 수년간 투자한 비용이 거액에 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정을 그대로 소멸시키기보다는 정당한 상속인에게 이전함으로써 상속권을 보장하는 편이 이용자 권익에 부합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용자 사망이라는 특정 상황에 한정되며, 생전의 계정 양도나 거래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해당 사업자 역시 프라이버시 보호를 완전히 간과하는 것은 아니다. 계정 승계 절차에서 고인의 개인정보와 상속인들의 추가 정보 수집이 불가피하므로, 이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와 남용 방지도도 유의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게임 서비스 제공자는 “디지털 자산 = 상속 자산이라는 관점 아래 상속권을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프라이버시 중시의 플랫폼 사업자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나. 디지털 유산 현행 관리 방식과 애로사항

두 플랫폼사업자는 현재 KISO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하여 자체적으로 절차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유족의 요청이 있을 시 개별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유족이 고인의

사망 사실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검토 후 조치하는데,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유형(공개된 블로그 게시물, 게시판 글 등 공개 정보는 백업 형태로 제공하며, 고인의 전자지갑 잔액, 포인트, 유료 구독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항목)과 불가한 유형(이메일, 클라우드 저장 파일, 메신저 대화 등 사생활 영역의 비공개 자료)을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유족 요청 시 계정 탈퇴를 지원하고 있다.

게임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현재 공식 고객지원 채널을 통해 상속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가족 등 유족이 사망자 계정의 이전을 요청하면, 필요한 증빙을 제출받아 내부 심사를 거쳐 계정 명의변경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요구되는 서류로는 사망 사실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으며, 상속 관계에 있는 가족이 여러 명일 경우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나 포기 확인서 제출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한 명의 상속권자에게 계정을 이전한 뒤 추후에 다른 상속인이 문제 제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로, 현실의 상속 포기 절차를 준용한 것이다. 이렇게 서류 심사가 완료되면 계정에 등록된 명의(이름, 아이디 등)를 유족으로 변경하고, 유족이 해당 게임 계정에 로그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계정 내 아이템, 캐릭터 등의 모든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효과가 발생하며, 사실상 디지털 게임 자산의 상속을 현실에서 집행하는 셈이다.

플랫폼사업자의 현행 디지털 유산 관리 시 애로사항으로는 첫째, 정당한 상속인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는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등으로 정해져 있으나, 디지털 유산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 설령 민법상 상속권자에게 디지털 유산을 승계한다고 하여도 상속권자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해당 분쟁에 법적으로 개입할 권한이 없으며 이를 예방할 기준도 부재하다. 둘째, 사업자는 이용자의 사망 사실 인지가 불가능하므로 데이터의 관리 및 보유 기한에 대한 모호함이 있다. 유족의 신고가 있지 않은 한, 사업자는 해당 계정 소유자가 사망했는지 자체적으로 알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셋째, 기술적 제약과 제3자 권리 보호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한 플랫폼의 메신저 서비스는 애초에 이용자의 대화 내용을 단기간(예컨대 2~3일)만 저장하고 그 이후에는 보존하지 않는다. 그리고 설령 이러한 기술적 한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대화 내용의 경우 고인뿐만 아니라 상대방(제3자)의 발언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유족에게 넘기는 것이 상대방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결국은 사업자가 디지털 유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면할 상황은 매우 다양하나 결국 각 업체의 판단에 의존하다 보니, 사업자마다 대응이 달라지고 문제 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밖에 없다.

게임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직면한 어려움도 위 두 플랫폼사업자와 유사하다. 현재 계정 상속을 도와주는 행위는 명시적 법률에 따른 의무가 아니라 회사 차원의 자발적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기에 법적 분쟁 시 구속력이나 면책 근거가 불투명하여 회사 차원에서 위험이 될 수 있다. 이용자의 사망 인지의 불가능으로 인한 문제로는 영구히 살아있는 계정으로 남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계정이 해킹당하거나 악용될 위험, 혹은 방치된 데이터 관리 문제 등도 잠재적인 애로사항으로 지적된다. 게임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추가로 언급한 부분으로는 디지털유산 상속 절차에서 수집해야 하는 개인정보 이슈가 있다. 사망자 본인의 계정 정보 외에도, 상속인들의 신원 정보와 동의서 등을 받아야 하므로 처리해야 하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넓어지며 관리 부담이 증가한다. 특히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상속인 각자의 의사 합치를 이끌어내는 일이 쉽지 않을 수 있고, 민감정보 관리 측면에서 회사가 부담을 떠안는 측면도 있다.

다. 디지털 유산 관련 법·제도적 기준 또는 보호가 필요한 영역

2025년 현재, 디지털 유산 처리에 관한 국내법은 뚜렷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사망자의 정보는 개인정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여(고인의 데이터는 보호 대상 제외), 고인 데이터의 처리 원칙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있다. 상속에 관한 사항은 민법에 일반 규정이 있으나, 이는 주로 재산(유형 자산)을 전제로 하고 있어 디지털 자산이나 계정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지 못한다. 예컨대 전자우편, SNS 계정, 게임 캐릭터 등이 민법상 재산으로 상속 가능한지, 혹은 이용약관에 따른 권리로서 상속 제외되는지 등에 대한 명시적 법 규정이 부재하다. 앞에서 현재까지의 디지털 유산 관련 입법안 검토에서 논의하였듯, 현재까지 디지털 유산 관련 논의가 있을 때마다 개별 입법안이 국회에 발의되긴 했으나, 계정 승계를 강제하는 내용부터 서비스 약관에 위임하는 내용까지 제안이 다양하고 통일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사업자들은 민간 자율적 규제로 대응하고 있으나, 이것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으므로 어디까지나 권고 수준의 기준에 머물러 있다. 플랫폼사업자들이 준용하는 KISO 가이드 라인도 민간협회의에 의한 정책일 뿐 법령은 아니며, 게임사의 내부 정책(Q&A 안내 등)도

자체 원칙일 뿐 공식 법규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이렇듯 법·제도의 공백 속에서, 기업들은 각자 약관이나 정책에 “계정은 양도 불가”, “고인 프라이버시 보호” 등의 원칙만 명시하고 운영하는 실정이다.

인터뷰 및 자료 검토 결과, 디지털 유산과 관련해 법·제도적으로 특히 논의가 필요한 쟁점 영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속권과 개인정보 보호의 경계 설정이다. 고인의 데이터는 엄밀히는 개인정보보호법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사생활 비밀과 명예에 관한 보호는 사후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고, 동시에 상속인으로서 고인의 디지털 자산이나 기록에 접근할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다. 양측 권익의 교차를 어떻게 조율할지 법적 원칙 마련이 필요한데, 특히 사적인 통신 내용의 경우 제3자의 개인정보와 통신비밀도 겹쳐져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디지털 유산의 유형별 법적 성질 규명이다. 게임 아이템, 전자화폐, 포인트 등은 경제적 가치가 있으므로 상속 재산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춰가는 한편, 계정 자체는 이용 계약상의 권리이므로 계약 당사자 이외 제3자에게 이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중론이다. 즉, 디지털 유산에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고, 각 유형별 관련한 기존 법령을 검토하여야 한다. 셋째, 이용자의 의사와 사전 지정권 보장이다. 법제 내에서 이용자에게 본인의 디지털 유산 수탁자 및 처리 방식을 사전 지정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고, 실질적으로 권리 행사를 위한 방법(opt-in제도 도입 등)을 사업자가 마련하도록 할 수 있다. 넷째, 사업자의 책임과 면책 범위 설정이다. 만약 법적 기준과 이용자 의사가 충돌하거나,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경우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RUFADAA 등 해외 입법 예시에서는 “서비스 사업자가 이용자 약관 또는 이용자 생전 지시에 따라 처리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면책조항이나 분쟁 발생 시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해주어야 사업자들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 협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다섯째, 고인의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등 기타 권리문제도 있다. 이용자가 남긴 글, 사진 등은 창작물인 경우 저작권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 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접근을 막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는 공개 게시물에 한해 백업 제공이 이뤄지지만, 비공개 창작물의 상속권 행사 문제도 향후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영역에서 법적 기준과 보호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요컨대 “어떤 디지털 정보가 상속 대상이 되고, 이용자 생전 의사와

상속인의 권리 중 무엇을 우선시하며, 사업자의 이행 책임은 어디까지인지”를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와 법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였다. 사업자들도 사회적 합의가 선행된다면 정책 변화에 따른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이러한 논의를 지원할 법·제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위 인터뷰 내용을 종합하여 디지털 유산 관리를 위한 사업자의 현행 자율 대응의 한계와 향후 법제화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의 디지털 유산 대응은 각 사업자의 자율적 정책에 의존하고 있어 편차와 제약이 크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표준화된 규범 부재로 인해 사업자마다 처리 범위나 절차가 달라, 이용자나 유족 입장에서는 서비스별로 다른 대응을 받아 혼란을 겪을 수 있다. 또한 법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디지털 유산 정책이 미비 사업자에 대한 강제 수단도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대형 사업자는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지만, 중소 규모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 디지털 유산 정책이 전무한 곳도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자율 대응은 어디까지나 임의적이므로,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신속한 조정이나 강제력에도 한계가 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사회적 참사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정부와 이용자가 요구하더라도, 법적 뒷받침이 없다면 사업자는 적극 협조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실제로도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자들은 “과도한 책임을 지는 일”을 경계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움직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용자 권익 구제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이 현행 체계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디지털 유산의 관리 및 승계와 관련한 입법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인터뷰에 응한 사업자들은 공통적으로 법적 기준 마련의 순기능을 인정했다. 우선 현행 자율 규제로 인한 혼선을 줄이고 명확한 원칙에 따라 대응하기 위해 법제화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입법 방향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프라이버시와 상속권의 균형이라는 본질적 가치 충돌을 참작하여, 일방의 이익만을 강제로 관철하는 법률은 곤란하다는 의견이다. 예를 들어 “기술적·경제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으로 모든 데이터를 제공하라는 식의 입법은 현실에 맞지 않으며,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경우 오히려 소극적 대응이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래서 제시되는 것이 해외 입법례를 참고한 절충안이다. 앞에서 검토하였듯, RUFADAA의 경우 이용자가 생전에 디지털 유산 처리에 대한 의사를 남긴 경우 그것을 최우선 존중하고, 별도 의사가

없을 때는 서비스 약관 등 사업자의 정책을 따르며, 이마저 존재하지 않을 때 적용 가능한 기본 규칙을 제공하는 “3단계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자가 이러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했을 경우 면책함으로써 분쟁 발생 시 책임 부담을 덜어주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플랫폼사업자들은 이러한 접근법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용자 의사 → 약관 → 기본 규칙”의 체계 정립과 사업자 면책 규정에 긍정적이다. 이는 이용자 자기결정권 존중, 사업자의 법적 안전장치 확보, 상속인의 구제 기회 부여를 조화시키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한편, 업종별 특수성에 대한 고려도 입법 시 반영되길 바라고 있다. 디지털 유산의 재산적 성격을 감안한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모든 디지털 서비스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법을 만들기보다는, 게임과 같이 자산적 가치가 큰 분야부터 우선 표준을 만들고 점차 확대해 가는 단계적 접근을 제안하였다. 반면 포털 등 플랫폼은 모든 온라인 서비스에 적용될 일반법 형태로 논의가 이루어지되, 세부 시행은 서비스 유형별로 유연성을 두는 방식을 선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와 게임, 전자우편 서비스는 데이터 특성이 다르므로 하위 규정이나 표준약관 등에서 세분된 지침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결국 입법은 하되, 획일적인 규제가 아닌 가이드라인형 법제가 이상적이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다. 특히 사업자의 자율성과 창의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코드화된 자율규제”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2. 이용자 의견

이용자의 디지털 유산에 대한 인식과 관련 정책 방향에 관한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2024년 12월 말 기준 지난 3개월간 인터넷 서비스(SNS, 메신저,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500명을 대상으로 이용자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3-1〉 디지털 유산 이용자 인식 조사 응답자 특성

		사례 수	%
전체		(500)	100.0
성별	남성	(254)	50.8
	여성	(246)	49.2
연령대	20대	(86)	17.2
	30대	(90)	18.0
	40대	(103)	20.6
	50대	(117)	23.4
	60대	(104)	20.8
지역	서울	(94)	18.8
	경기/강원권	(182)	36.4
	충청권	(50)	10.0
	호남권	(52)	10.4
	경북권	(48)	9.6
	경남권	(74)	14.8
직업	자영업/판매/서비스직	(63)	12.6
	기능/숙련공/일반작업직	(37)	7.4
	사무/기술/경영/관리/전문/자유직	(243)	48.6
	주부/학생/무직	(157)	31.4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	0.4
	고등학교 졸업	(125)	25.0
	대학 재학/졸업 이상	(373)	74.6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	(130)	26.0
	200만 원~399만 원	(219)	43.8
	400만 원 이상	(151)	30.2

가. 디지털 유산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결과, 약 절반 수준인 46.8%의 응답자가 ‘디지털 유산’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 있다고 답했고 53.2%는 들어본 적 없다고 응답했다. 남성의 인지도가 50.0%로 여성(43.5%)보다 조금 높았으며, 연령대별로는 30대의 용어 인지도(54.4%)가 가장 높고 40대가 가장 낮았다(42.7%). 즉, 비교적 젊은 층에서 디지털 유산에 대한 인지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전 연령대에 걸쳐 디지털 유산에 대한 개념 자체를 들어본 경험이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이 디지털 유산에 해당한다고 보는지에 대해 가상화폐부터 온라인 활동 기록에 이르는 네 가지 주요 범주에 대해 “해당 항목이 디지털 유산에 속한다고 생각”하는지 질의하였다. 그 결과 금전적 가치가 분명한 사이버 자산인 가상화폐(포인트, 마일리지, 사이버 머니 등)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응답자인 응답자의 78.8%가 디지털 유산에 포함된다고 인식하였다. 뒤이어 엔터테인먼트/문화 영역의 디지털 콘텐츠(개인 소유 게임 아이템·아바타, 직접 제작한 음악·동영상 등)에 대해서도 상당수 응답자인 68.6%가 디지털 유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온라인상의 활동 및 커뮤니케이션 내용(블로그/SNS 게시물, 댓글, 사진 등)에 대해서는 54.8%가 해당 내용을 디지털 유산으로 간주하였으나, 금전적 가치가 뚜렷한 자산에 비해서는 다소 인식률이 낮았다. 온라인 서비스 구독권/계정 등 기타 디지털 자산(인터넷 도메인, 각종 온라인 서비스 이용권 등)에 대해서는 46.6%만이 디지털 유산에 포함된다고 답하여, 유형 자산에 비해 인식 비율이 가장 낮았다.

응답자들은 금전적 가치가 분명한 사이버 자산일수록 디지털 유산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높았고, 사회적/커뮤니케이션적 콘텐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인식이 낮았다. 특히 30대의 경우 모든 범주의 항목에 대해 가장 포괄적으로 디지털 유산에 포함된다고 보는 경향이 있었으며, 40대는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와 구독권 등에 대한 인식률이 비교적 높았다.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가상화폐와 같이 현금성이 있는 자산에는 공감대가 높지만, 일부 디지털 콘텐츠 항목에 대해서는 유산으로 여기지 않는 비율이 더 높아 세대별로 인식 범위에 차이가 나타났다.

〈표 3-2〉 디지털 유산 인식 관련 회귀분석 결과

분류 기준	분류(설명변수)	디지털 유산 관련 인식수준(종속변수)		
		용어 인식 정도	디지털 유산 개념 포괄성 ³⁵⁾	상속을 원하는 정도
프라이버시 패러독스	지난 1년간 게시물 작성 경험 있음	+	-	+
	지난 1년간 매일 게시물 작성	-	-	-
	작성한 게시물을 전체 공개로 설정함	-	+	+
	인터넷 서비스를 매일 이용함	-	***	***
디지털 네이티브	1980년생 이하	+	+	***
가상화폐 보유 여부	보유 중	***	***	***
금전적 가치가 있는 콘텐츠 창출 경험	경험 있음	-	-	+

주: 1) 표 안의 부호(+, -)는 회귀분석 결과 설명변수가 종속변수와 부(-) 또는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음을 표현

2) 부호 오른쪽 별표의 개수가 많을수록 통계적으로 강한 상관관계를 표현함. 별표가 없는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상관관계임. (***) $p < 0.01$, ** $p < 0.05$, * $p < 0.1$)

3) 공통적인 통계 변수는 성별, 연령, 학력, 소득임

35) 본 이용자 조사는 응답자에게 디지털 유산의 개념을 제공하기 전, 이들이 애초에 디지털 유산에 대해 얼마나 포괄적으로 생각하는지 보기 위해 고의적인 설계를 하였다. 이를 위해 디지털 유산에 속할 수 있는 네 카테고리를 보여주고, 각각 디지털 유산에 속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따라서 '디지털 유산 개념 포괄성' 변수는 응답자가 주어진 네 카테고리 중 몇 개의 카테고리를 디지털 유산에 속한다고 생각하는지를 계산한 것이고, 긍정 정도에 따라 1에서 4의 값을 가진다.

1. (엔터테인먼트/문화 영역) 개인 계정 소유의 게임 아이템 및 아바타, 개인이 만든 디지털 형태의 음악, 동영상 등
2. (온라인상의 활동 및 커뮤니케이션 내용)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SNS, 미니 홈페이지, 온라인 카페 등의 게시물, 댓글, 사진 등
3. (가상화폐) 각종 포인트, 마일리지, 사이버 머니 등 거래 가능한 온라인 화폐
4. (온라인 서비스 구독권/이용권 등 기타 디지털 유산) 인터넷 도메인, 특정 온라인 계정이용권, 구독권 등

다음으로 디지털 유산 인식 수준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몇 가지 요인의 영향력을 회귀분석으로 검토하였다. 요인으로는 (1) 프라이버시 패러독스(온라인상에 남기는 디지털 흔적 수준과 프라이버시 민감도의 관계), (2) 디지털 네이티브(1980년 이후 출생자로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세대) 여부, (3) 가상화폐 보유 여부, (4) 금전적 가치 있는 콘텐츠의 창출 경험 여부, 그리고 (5)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고려되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프라이버시 패러독스) 최근 1년간 게시물을 작성한 경험, 작성 빈도, 게시물 공개 설정 등 개인이 온라인에 남기는 흔적의 정도와 프라이버시 태도를 나타내는 지표들은 디지털 유산 인식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온라인 활동이 활발하다고 해서 디지털 유산 개념을 더 잘 인지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세대(1980년대생 이하)인 응답자는 이전 세대보다 디지털 유산을 상속받길 원하는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다만 용어 인지도나 개념의 포괄성 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고, 상속 의향 측면에서만 차이가 나타나 디지털 네이티브가 디지털 자산 승계에 더 적극적인임을 시사한다.
- (가상화폐 보유) 가상 화폐(포인트·마일리지 등)를 보유한 응답자는 비보유자와 비교하면 디지털 유산 관련 인식 지표들이 모두 높았다. 구체적으로, 용어 인지도도 높고 디지털 유산의 범위를 더 포괄적으로 인정했으며, 자신의 디지털 자산을 상속하고자 하는 의향도 유의하게 강했다. 가상자산을 실제로 보유한 경험이 디지털 유산 인식을 크게 높이는 핵심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 (금전적 가치 있는 콘텐츠 창출 경험) 유튜브나 블로그 등 온라인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본 경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간에 디지털 유산 인식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경제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콘텐츠를 생산한 경험 그 자체는 디지털 유산의 개념 인지나 상속 의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
-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구통계 요인 중에서는 학력 수준이 디지털 유산 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대학 재학 이상 학력을 가진 응답자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디지털 유산 용어를 들어본 적 있다고 답할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성별이나 연령 등의 영향력은 위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두드러지지 않았다.

나. 디지털 유산 정책 방향성 관련 의견

디지털 유산 상속 대상(수탁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디지털 유산을 어떤 대상에게 물려줄 것인지에 대한 선호도를 묻은 결과, 응답자들은 “직계 가족”을 상속 대상 1순위로 가장 많이 지목했다. 그다음으로 생전에 본인이 지정한 사람을 선호하며, “상속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준다”라는 응답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이는 법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가까운 가족에게 디지털 유산을 물려주는 것을 대체로 타당하게 여기며 그다음으로 이용자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요 온라인 서비스 기업들이 제공하기 시작한 “사후 디지털 유산 관리자를 사전에 지정해 두는 기능”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낮았다. 해당 기능의 존재를 “들어본 적 있다”고 답한 이용자는 전체의 21.2%에 그쳤다. 나아가 실제로 그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계정에 유산 관리자를 지정해 둔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20.8%에 불과하였다. 이를 전체 응답자로 환산하면 약 4% 정도에 지나지 않는 매우 낮은 수치로, 대다수 이용자는 디지털 유산 관리자 지정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현재 해당 기능을 제공 중인 사업자들이 그 존재를 사용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디지털 유산의 원활한 상속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별도의 법률이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질문한 결과, 응답자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5점 만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동의 수준이 평균 3.7점에 이르러 비교적 높았으며, “동의한다” 또는 “매우 동의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디지털 유산 상속과 관련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법제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이용자들이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앞서 언급한 상속인 자동 지정 방안에 대해서도 절대다수의 반대 없이 비교적 수용적인 태도를 보인 만큼, 공공 주도의 법·제도 마련에 대체로 우호적인 여론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디지털 유산 상속 정책은 각 인터넷 서비스 기업이 자사의 서비스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문장에 대한 동의 수준은 평균 3.4점으로 집계되었다. 응답자들은 이 문항에도 비교적 긍정적인 편에 속하는 반응을 보였지만, 국가 법제 마련 필요성 문항(3.7점)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공감도를 보였다. 이는 이용자들이 디지털 유산 문제에 있어 기업 자율에 맡기기보다는 일정 수준 공적 규율을 기대하면서도, 동시에 각 서비스 특성에 부합하는 개별 대응의 중요성도 인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요컨대 정부 차원의 법적 가이드라인이나 제도를 수립하되, 개별 사업자가 자신의 특성에 맞는 상속 관리 기능이나 정책을 운용할 여지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사용자 인식이라 볼 수 있다.

제2 절 관련 현행법 검토 및 정책 방안

1. 관련 현행법 검토

디지털 유산의 법제화를 논의하기에 앞서, 관련 현행 법령들과의 충돌 가능성 및 해석상 쟁점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 법체계에서 디지털 유산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법률로는 민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법률은 각각 보호하려는 법익과 규율 내용이 달라 디지털 유산 문제에 적용할 경우 상호 충돌하거나 모순을 빚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용자와 사업자의 혼란을 줄이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본 절차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민법 측면에서, 현행 민법 제1005조는 상속에 관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에 속한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민법상의 ‘재산’ 개념에 디지털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원칙적으로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채권, 소유권 등)는 상속의 대상이 된다. 이 해석을 그대로 적용하면, 고인이 생전에 맺은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에서 발생하는 재산적 권리(유료 콘텐츠에 대한 이용권, 가상자산 잔액 등)는 상속인에게 승계될 여지가 있다. 다만 계약의 성질이나 당사자 합의(약관)에 따라 권리 승계를 제한하는 해석도 가능하나, 디지털 유산이 민법상 상속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례법리는 우리나라에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다. 결국 민법 일반 규정으로 해결하려 하면 해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디지털 유산 논의에 있어 핵심적인 법률 중 하나다. 이 법은 살아있는 개인의 개인정보 처리를 엄격히 규율하여 본인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등). 그런데 고인의 계정이나 데이터에는 고인에 관한 각종 개인정보(프로필 정보, 저장 파일 등)가 포함되어 있고, 이를 유족에게 넘기는 행위는 법적으로 보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특히 고인이 생전에 해당 제공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사업자가 임의로 유족에게 개인정보를 넘겼을 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사자(죽은 자)의 정보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다. 즉 동 법은 살아있는 개인을 보호 대상으로 하므로 고인의 정보는 엄밀히는 이 범위 밖이라는 견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인의 이메일, 사진 등의 내용에는 타인의 개인정보(예: 고인과 교류했던 사람들의 정보)가 포함될 수 있고, 또 사망 시점에 고인을 '살아있는 개인'으로 오인하여 처리가 진행될 수도 있어, 실제 현장에서 사업자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무시하기 어렵다. 요컨대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는 고인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명확한 기준(사망자의 개인정보를 별도 범주로 다룰지, 동의 없이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한지 등)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업자들이 쉽게 행동하기 어렵고 법률 위험이 상존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역시 제약을 부여한다. 동법 제3조는 “누구든지 통신과 대화의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개인 간의 통신내용(이메일, 메신저 대화 등)의 비밀 보장을 강하게 요구한다. 따라서 고인이 생전에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의 내용 그 자체는 현행법상 타인에게 함부로 공개되거나 제공될 수 없다. 비록 상속인이 고인의 권리를 포괄 승계한다고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는 제3자의 권리(고인과 통신한 상대방의 비밀권 등)가 걸려 있어 단순히 상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내용을 열람시키기 어렵다. 실제로 국내 인터넷기업들은 이러한 이유로 고인의 메신저 대화, 이메일 본문 등은 유족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오직 계정에 연결된 주소록 연락처 정도만 특별한 승인 절차를 거쳐 제공한 사례가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문제는 디지털 유산 논의에서 민감한 쟁점으로, 헌법상 통신의 자유 및 비밀 보장 원칙(헌법 제18조)과도 직결된다. 따라서 고인의 통신 내용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법률 간 충돌을 해소하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정보통신망법도 간접적으로 관련된다. 동법 제49조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비밀 등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비밀”에는 이용자가 온라인 서비스에 남긴 다양한 비공개 정보가 포함된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은 휴면계정 정리나 개인정보 파기에 대한 기준을 두고 있어, 일정 기간 활동이 없는 계정의 데이터 삭제 의무 등이 사업자에게 부과된다. 이 역시 디지털 유산 논의와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다. 예컨대 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인의 계정이 일정 기간 접속이 없으면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는데, 유족은 사망 후 한참 뒤에야 그 존재를 알게 되어 상속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법률상 파기 의무와 유족의 상속 청구 사이에서 난처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 다행히 해당 규정들은 유족 요청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를 인정할 여지가 있으나, 명확한 가이드가 없다면 어느 쪽을 따를지 판단하기 어렵다.

나아가, 헌법상의 기본권 충돌 문제도 있다. 디지털 유산에는 고인의 재산권(헌법 제23조)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가 동시에 걸려 있고, 또한 앞서 언급한 통신의 비밀(헌법 제18조) 및 기업의 영업의 자유(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 재산권)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고인의 가족이 고인의 SNS 계정을 물려받아 접근할 권리는 재산권적 측면이 있지만, 그 계정에 담긴 고인의 사적인 내용은 사생활 비밀로서 보호될 가치가 있다. 또한 그 계정과 교류한 다른 이용자들의 통신의 자유도 고려해야 하며, 서비스 기업은 이용자와 맺은 약정을 근거로 영업의 자유를 행사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법익의 충돌 상황에서 어떤 가치를 우선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입법 과정에서 매우 신중한 이익형량이 요구된다.

정리하면, 디지털 유산의 상속을 인정하거나 절차를 마련하려는 법제화 시에는 다음과 같은 법적 검토 사항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 상속 대상 및 범위의 명확화: 민법 등에서 상속할 수 있는 권리로 인정할 디지털 자산의 범주 정의. 계정 자체의 승계 여부, 디지털 콘텐츠(데이터) 자체의 재산권 인정 여부 등을 분명히 해야 한다.
- 이용자 의사 우선 원칙 및 방식: 고인이 생전에 자신의 디지털 자료 처리에 대해 의사를 표시할 기회를 보장할 것인지, 보장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전에 유언장처럼 디지털 유산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게 할지, 아니면 각 서비스 제공자가 “사망 시 계정 처리” 옵션을 제공하도록 할지 등이 고려된다.
- 제3자 프라이버시 보호조치: 이메일, SNS 메시지 등 통신 내용의 상속 문제를 다룰 때, 그 통신의 상대방 권리 보호를 어떻게 할지 규정해야 한다. 예컨대 고인의 이메일 내용을 유족이 열람하려 할 때, 그 메일 발신인의 동의가 필요할지 여부 등이다.
- 상속인 간 권리 분배: 디지털 유산에 금전적 가치가 있고 상속인이 여러인 경우, 그 권리 귀속을 어떻게 할지 정해야 한다. 프랑스는 공동상속인 간에 분쟁이 있으면 법원이 개입하도록 한 바 있고,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 재산은 공유로 본다.

디지털 자산에도 이를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 계약과 법률의 관계: 향후 제정될 법령과 기존 서비스 약관 간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 예컨대 어떤 기업 약관에 “사망 시 계정은 자동 폐쇄되고 데이터는 모두 삭제된다”라는 조항이 있더라도, 법에서 디지털 유산 상속을 보장하면 해당 약관 조항을 무효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일정 범위 내에서 약관으로 달리 정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 국내법 적용 한계 및 해외사업자 문제: 국내에 서버나 지사가 없는 글로벌 서비스(예: 해외 SNS)에 국내법을 어떻게 적용·집행할지도 고민해야 한다. 국내법으로 의무를 부과해도 해외사업자가 응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으므로, 국제 공조나 이용자 교육 등 보완책도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사항들은 위에서 살펴볼 단계별 정책 방안과 맞물려 있으며, 각각 법제화 수준에 따라 다르게 다루어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디지털 유산 법제가 헌법과 기존 법률 체계 내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민법상의 상속 원칙과 개인정보·통신비밀 보호 규범 사이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법안의 구체적 내용이 크게 달라질 것이므로, 관련 부처와 전문가 그룹의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2. 단계별 정책 방안³⁶⁾

디지털 유산 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정책 방안은 정부 개입 정도와 규율 방식에 따라 여러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가장 적은 민간 자율로부터 점진적으로 개입을 늘려가는 자율규제, 표준약관, 개별입법까지 네 가지 모델을 단계별로 살펴본다. 각 방안에 대하여 정의와 구현 방식, 기존 제도와와의 연계, 장단점, 이해관계자 반응, 실행 가능성 및 쟁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국내외 사례를 참고하여 현실적인 적용 방안을 제시한다.

36) 해당 내용은 본 정책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위탁자문결과인 이해원(2025)을 정리 및 구체화하여 작성하였다.

① 민간자율

가. 정의

민간자율 모델은 말 그대로 정부가 특별한 개입이나 새로운 규제를 하지 않고, 디지털 유산 문제를 전적으로 민간(기업과 이용자)의 자율에 맡기는 방안이다. 이는 현행 법제도를 내에서 개별 기업들이 각자 자율적으로 디지털 유산 관련 정책을 정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접근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유럽의 일부 국가들(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대륙법계 국가)이 현재 이 모델에 가까운 상태인데, 이들 국가는 디지털 유산에 대해 별도의 입법을 하지 않고 민법 등 기존 법률의 해석이나 판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은 디지털 유산 전용 법률 없이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 상속 법리를 적용해 판례로 고인의 계정 접근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민간자율은 가장 자유방임적인 단계로서,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므로 모든 것은 시장과 당사자 간 계약에 맡겨진다.

나. 가능 적용 사례 및 기존 제도와의 연계

민간자율 모델에서는 각 기업의 약관이나 내부 정책이 곧 디지털 유산 처리의 규범이 된다. 이미 국내 주요 인터넷 기업들이 나름의 지침을 갖고 있는 현 상황이 이에 해당한다. 가령 한 이메일 서비스업체는 “가족이 사망확인서와 신분증을 제출하면 계정 데이터의 일부를 내려받을 수 있게 한다”라는 자체 방침을 운용할 수 있고, 한 게임업체는 “상속인이 증빙하면 캐릭터 양도를 1회 지원한다”라는 내부 규칙을 둘 수 있다. 이는 법률상 강제 규범이 아니므로 어디까지나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합의 또는 회사의 호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법적으로 보면, 전자의 경우 이용약관 등의 계약 조항으로서 효력이 있을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 회사의 자발적 서비스 제공(쌍방 합의 없는 호의관계)으로 법적 구속력이 불명확할 수 있다. 민간자율 모델은 현행법 체계와 직접 충돌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존 법령 해석으로 포섭할 수 있는 부분은 민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해석론에 맡기고 나머지는 계약 자치에 맡겨두는 형태라 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제도와의 연계를 논한다면 민간자율은 별도의 새로운 제도 도입이 없다는 것 자체가 특징이므로, 연계라기보다 현상 유지에 가깝다.

다. 장단점

민간자율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 기업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극대화된다는 점이다. 정부 개입이 없으므로, 사업자는 자신의 서비스 특성과 비즈니스 모델에 맞추어 디지털 유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는 데 유리하다. 용어와 개념이 분명히 정립되지 않은 디지털 유산 분야에서 성급한 법·제도 도입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데, 민간자율은 그런 위험 가능성을 낮춘다. 또한 규제가 없으므로 행정적 부담과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부 입장에서도 입법이나 감독에 드는 노력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각 기업이 자율적으로 이용자 요구를 수용하면 어느 정도 문제 해결이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단점도 존재한다. 첫째, 국민 권리 보장의 취약성이다. 디지털 유산 처리 여부와 수준이 전적으로 기업에 맡겨지면, 이용자(유족)의 권리는 기업의 정책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협상력이나 경제력이 우위에 있는 거대 기업일수록 자사에 유리하게(즉 공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정할 가능성이 높고, 이용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둘째, 정부의 사전 개입 및 사후 규제 수단의 부재이다. 민간자율 모델에서는 디지털 유산 문제는 어디까지나 사인(私人)간 문제이므로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없다. 또한 기업의 정책이 약관이 아닌 호의적 조치로 이루어지는 경우 법적 강제력이 없어서, 기업이 약속을 어겨도 이용자가 이를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유족에게 계정 데이터를 제공해 주기로 구두 정책을 밝혔더라도, 막상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 셋째, 기업 간 정책 불일치로 인한 혼선이다. 유사한 서비스라도 기업마다 다른 규정을 둘 수 있고, 이용자들은 서비스마다 상속 여부가 다르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단점들로 인해, 순수 민간자율에 맡길 경우 국민 일반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되지 못할 위험이 있다.

라. 이해관계자 반응 및 실행 가능성

민간자율 모델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은 엇갈릴 수 있다. 사업자 측에서는 규제 부담이 없으므로 표면적으로 환영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국가마다 다른 규제를 적용받는 것을 꺼리므로, 한국에서 별도 규제가 없다면 글로벌

기준에 맞춰 일관되게 서비스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느낄 것이다. 반면 이용자 측에서는 민간자율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을 수 있다. 이용자 권리가 기업 재량에 좌우되는 상황에 불안감을 느끼고, 더 명확한 법적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입법부로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방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어 민간자율 유지에 정치적 부담이 따를 수 있다.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 민간자율은 현재 사실상 유지되고 있다. 특별히 새로운 예산이나 법률 제정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실행상 장애는 가장 적다. 그러나 현 상태 그대로 방치했을 때 발생할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업별 상이한 대응으로 이용자 불만이 누적되거나 혹은 어느 한 사건에서 사회적 공분이 일어날 경우(예컨대 유명인 사망 시 디지털 유산 공개 여부를 둘러싼 논란), 민간자율 기조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해외에서는 이미 다양한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국제적 흐름에 뒤처졌다는 평가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민간자율 모델은 가장 신속하고 손쉬운 선택이지만, 그것이 최선인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마. 국내외 참고 사례와 적용 방안

민간자율과 유사한 정책을 취하고 있는 대표적 국외 사례로 독일을 들 수 있다. 독일은 별도 입법 없이 2018년 연방대법원 판결을 통해 디지털 자산의 상속 원칙을 확립하였는데, 이후 독일의 주요 인터넷 기업들은 판례에 부합하도록 약관을 정비하거나 개별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예컨대 페이스북은 사망자 계정에 대해 유족이 추모 상태로 전환하거나 일정 접근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고, 이메일 서비스들도 각 사 정책에 따라 대응한다. 일본 또한 현재까지 구체적인 입법 없이 민간의 대응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일본의 대형 포털들은 유족이 신청하면 일부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삭제해 주는 가이드라인을 공개해 두고 있으며, 정부는 2021년 전자정보의 사후 처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권고적 지침 형태로 발표한 상태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완전한 방임이라기보다 정부 비개입을 전제로 한 민간의 자율 대응 촉진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민간자율 모델을 현실적으로 적용하려면, 기업들의 적극적인 자율 노력을 유도하는 것이 관건이다. 예컨대 KISO 등 업계 단체를 통한 정보 공유와 모범사례 전파를 장려하고, 소비자단체를 통해 기업들을 견인하는 방법이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식 규제는 아니더라도 권고 의견을 표명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법적 강제력 없이도 사실상의 소프트-레귤레이션(soft regulation) 역할을 하여 자율 규범을 정립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어디까지나 법률이 아닌 권고이므로 기업이 이를 따르지 않아도 처벌할 방법은 없으며, 결과적으로 민간자율과 자율규제의 중간 단계 정도로 볼 수 있다.

요약하면, 민간자율 방안은 디지털 유산 문제에 대해 당장 새로운 법률을 도입하지 않고 현 체제 내에서 해결을 도모하는 접근이다. 가장 손쉬운 길이지만, 이용자 권익 보호 미흡과 법적 불확실성 문제가 따른다는 점에서 이를 지속 가능한 대안으로 삼을지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② 자율규제

가. 정의

자율규제는 민간이 주도하여 규율 체계를 만들고 이를 자체적으로 준수함으로써, 정부의 명시적 개입이 없더라도 디지털 유산에 관하여 일정 부분 통일되고 안정적인 규율 체계를 갖추는 방안이다. 여러 사업자가 공통적으로 인식할 필요성이 있을 때(예컨대 이용자의 수요가 있는 상황), 어느 정도 균질화된 방침을 가지고 대응하는 방식을 갖추겠다는 취지다.

나. 가능 적용 사례 및 기존 제도와 연계

자율규제 모델을 적용한다면, 업계 공통의 가이드라인이나 자율 강령 제정이 시발점이 될 텐데, 실정법상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전체를 포괄하는 자율규제 근거 규정은 없으며, 위 사업자들 전부가 회원으로 가입한 협회 및 단체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률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민간이 마련한 자율규제를 승인하고 이행을 점검하는 유형의 자율규제는 불가능하며, 정부 개입이 최소화된 순수한 형태의 자율규제가 당장 가능한 방안이다. 만약 향후 자율규제를 도입하려면, 보다 포괄적이고 강력한 업계 협의체가 필요할 수 있다. 이상적인 형태는 모든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포털, SNS, 메신저, 게임, 커뮤니티 등)가 참여하는 협회나 기구에서 디지털 유산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회원사들이 이를 준수하는 것이겠지만, 현존하는 한국인터넷 기업협회, KISO,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등 관련 협회 및 단체를 통하여 적어도 이들

회원사를 대상으로 디지털 유산 관련 자율규제를 신속히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³⁷⁾.

기존 제도와 연계 측면에서, 현행 법령에 자율규제에 대한 근거 규정은 뚜렷하지 않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 분야에서 자율심의기구를 인정하는 사례는 있으나(예컨대 인터넷 내용자율심의), 디지털 유산처럼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포괄하는 자율규제 틀은 아직 없다. 만약 이를 추진하려면, 정보통신망법 등을 개정하여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자율규약을 만들고 정부가 이를 승인·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고도, 민간 주도로 자율규제가 이뤄지는 것은 가능하나 정부의 후견적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 장단점

자율규제 모델의 장점은 신속성과 전문성, 그리고 일정 수준의 통일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첫째, 신속한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 법령 제정과 달리 업계 합의로 규칙을 만들면 복잡한 입법 절차가 필요 없으므로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디지털 유산 체계를 수립할 수 있다.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도 쉬워, 기술 발전이나 새로운 서비스 출현 시 규약을 개정하여 대응할 수 있다. 둘째, 전문성과 합리성을 살릴 수 있다. 시장 참여자인 기업들이 협의를 통해 규칙을 만들므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것보다 현실적이고 세부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동종 업계별로 자율규제를 시행하면 해당 사업 특성에 맞춘 규율이 가능하여, 서비스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 셋째, 자율규제를 통하면 민간자율 모델의 단점이 일부 보완된다. 즉, 완전 자율에 맡겼을 때 기업마다 제각각일 것을, 업계 합의를 통해 일정 수준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국민 입장에서 천차만별의 대응보다는 나은 결과이며, 최소한 업계 공통표준이 생기는 효과가 있다. 마지막으로, 자율규제는 엄밀히 말해 법적 “규제”가 아니므로, 기업의 영업자유 침해 논란이 적다. 법률이 아니고 자발적 합의이기에, 규제법정주의 등 원칙에도 저촉되지 않으며 자유로운 시도가 가능하다.

자율규제의 주된 단점은 실효성 확보의 어려움이다. 애초에 강제력이 약한 것이 자율규제의 특징이므로, 참여 기업들이 규범을 안 지켜도 강제하거나 제재하기에

37)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경우 네이버, 카카오뿐 아니라 구글, 메타, 아마존 등의 한국 지사도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기대할 수도 있다.

곤란하다. 일례로 2014년 KISO 정책도 강제력이 없어서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회원사가 많았던 것으로 지적된다. 자율규제에 참여한 기업이 지키지 않을 경우, 정부가 개입하려면 결국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그 순간 이는 자율규제가 아닌 강제 규제로 전환된다. 두 번째 단점은 포괄성의 한계이다. 모든 사업자가 협의체에 참가하지 않을 수 있고, 특히 해외사업자는 국내 자율규제에 구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율규제로 규범을 만들어도 비회원사 혹은 해외기업이 따라주지 않으면 빈틈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국내 SNS들은 유사한 자율규약을 따르는데 어떤 해외 SNS가 전혀 다른 정책을 유지한다면, 이용자 불만이나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세 번째로, 자율규제는 어디까지나 기업 측 이익을 상당 부분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 기업들이 합의한다고 해도, 그것이 이용자 권리 보호에 충분한 수준인지 담보하기 어렵다. 협의 과정에서 이용자 대표나 공익 측 의견이 배제되면 기업 친화적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따라서 투명한 논의와 이해관계자 참여가 중요하지만, 이것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라. 국내외 참고 사례와 적용 방안

국내 인터넷 자율규제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인터넷 광고 자율심의를 들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민간 주도로 인터넷광고심의기구가 만들어져, 인터넷 광고 콘텐츠에 대한 사전심의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법적 강제가 아닌 업계 자율이지만 대부분의 주요 사업자가 참여하여 효과를 내고 있다. 디지털 유산 분야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민간 주도의 심의·조정 기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유산 관리위원회” 같은 것을 업계에서 조직하고, 여기서 상속 요청이 들어온 사안을 심의해 공동 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방식도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이는 하나의 중앙 창구를 통해 통일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처리 속도나 개별 기업의 독립성 측면에서는 도전이 있을 수 있다.

현실적인 적용 방안으로는, 우선 핵심 대형 사업자들(상위 포털 23사, 주요 게임사, SNS사 등)의 참여를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 기업이 참여 의사를 보이면 중견·중소 사업자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가능성이 높다. 정부 또는 중립기관이 주선하여 디지털 유산 자율규제 협의회를 구성한 뒤, 여기서 용어 정의, 상속 인증 절차, 제공 정보 종류, 이용자 사전 설정 옵션, 기업 면책 조건 등을 망라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도록 한다.

완성된 가이드라인은 모든 회원사에 적용되며, 필요시 공표하여 이용자에게도 공개함으로써 기업의 약속으로서의 무게를 실을 수 있다. 그리고 일정 간격을 두고 이행 평가를 시행하여 모범사례와 미흡 사례를 발표하여, 도덕적 압박을 가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정부는 정식 규제권 행사 대신 후견인 역할에 머무르며, 업계의 창의적인 해결책 도출을 독려한다. 이때 한 가지 고려할 점은, 자율규제라 해도 일부 법 개정이나 행정 지원이 병행되어야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디지털 유산 자율규약을 잘 이행한 기업에게는 개인정보보호 인증 가점 부여, 이용자 보호 우수기업 표창 등 특전을 줄 수 있고, 최소한의 법적 근거(앞서 예시한 승인 조항 등)를 마련해주면 기업들도 안심하고 따른다.

결론적으로, 자율규제 모델은 민간 주도의 규율 정립을 통해 통일성 있는 기준을 비교적 신속히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다만 강제력이 낮은 고질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뒷받침과 투명한 운영이 필수적이다. 궁극적으로 자율규제의 성패는 업계의 성숙도와 신뢰에 달려 있으며, 이 모델이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면 추후의 입법적 단계로의 진화를 준비하는 과도기적 해법으로서 의미를 가질 것이다.

③ 표준약관

가. 정의

표준약관 모델은 정부 또는 공적 기관(관련 협회 및 단체)이 디지털 유산 처리에 관한 표준화된 약관 조항을 마련하고, 사업자들이 이를 채택하도록 권장하는 방안이다. 여기에서 약관이란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계약 내용을 이루는 이용약관을 말한다. 즉, 정부가 직접 법률로 규율하기보다는 계약의 형식을 간접적으로 통일함으로써 이용자 사망 시의 처리 원칙을 사전에 명시해 두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소관 기관이 디지털 유산 관련 표준 조항을 제정 또는 인가하고, 각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는 자신의 이용약관에 그 조항을 반영하는 형태가 된다.

나. 법적 근거

우리나라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제19조의3에 따르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특정 거래 분야의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안을 마련하여 공정거래

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 후 이를 “표준약관”으로 공시하며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단체도 표준약관 제정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표준약관을 만들 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나 강제할 수는 없고, 다만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쓰는 사업자는 그 다른 내용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표준약관이 제정되어 있는데, 예컨대 “정보통신망 이용계약에 관한 표준약관” 등이 있다. 다만 디지털 유산 전용 표준약관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요약하면, 현행법 체계상 표준약관을 만들려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와 공시 절차가 필요하며, 이는 행정규칙 형태로 제정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부 부처(방송통신위원회 등)가 직접 약관을 정할 권한은 없으므로, 소비자정책 관할인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나 과기정통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하여 표준약관 제정 작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

다. 가능 적용 사례 및 기존 제도와 연계

표준약관 모델이 적용되면, 모든 주요 온라인 서비스 이용약관에 공통된 디지털 유산 조항이 등장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가상의 표준약관 조항 일부를 상상해 보면: “회원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회사에 이를 신고하고 계정 승계를 요청할 수 있다. 회사는 정당한 상속인임이 증명되면 다음의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처리한다: 1. 고인이 공개 설정한 게시물의 사본 교부 2. 잔여 사이버자산의 현금 환급 또는 양도 3. 계정의 추모 상태 전환 …” 등의 내용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이 여러 회사 약관에 동일하게 들어가면, 이용자로서는 서비스마다 다른 규정을 일일이 파악할 필요 없이 기본적인 권리를 예상할 수 있다.

기존 제도와 연계해서 보자면, 표준약관은 민간자율/자율규제와 법률 규제의 절충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약관 자체는 사적 계약이지만, 표준약관 제정에는 공적 개입이 있기 때문이다. 표준약관을 활용하면, 앞서 자율규제 단계를 밟지 않더라도 곧바로 공식 권고안을 마련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표준약관 모델은 개별입법 없이도 기업들의 행위를 일정 부분 구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 공백을 메우는 임시방편으로 쓰일 수 있다. 예컨대 입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우선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을 만들어 놓고,

이후 법 제정 시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표준약관은 공정거래법 체계 내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므로, 정보통신 분야의 새로운 문제인 디지털 유산에도 이 수단을 적용해 볼 수 있다.

라. 장단점

표준약관 모델의 첫 번째 장점은 일관되고 안정적인 정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약관은 계약의 내용이므로, 민간자율이나 자율규제 모델을 채택하면 기업이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약관을 작성하거나 아예 관련 내용을 약관에 넣지 않을 수도 있다. 반면 표준약관을 활용하면 거의 모든 디지털 서비스 계약이 합리적인 내용으로 보완되어, 이용자의 권리 보호에 큰 도움이 된다. 실제 오늘날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계약은 약관에 의해 체결되므로, 약관에서 디지털 유산 상속 관련 사항을 정해두면 문제의 상당 부분이 예방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또한 표준약관은 한 번 정해지면 해당 업계의 표준 계약조건으로 기능하므로, 정부 입장에서도 분야별로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 절차 면에서도 법률 제정보다 간단하여, 비교적 신속하게 제정할 수 있고 향후 개정도 유연하다.

둘째, 표준약관은 어디까지나 권고일 뿐 강제하지 않는다면 규제가 아니므로, 법 개정 없이 시행할 수 있거나 최소한의 법적 근거 마련만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는 입법의 어려움을 우회하는 현실적인 수단이 된다.

한편, 이러한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표준약관 모델의 가장 큰 단점은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표준약관은 기본적으로 권고사항이므로, 정책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정부가 사업자들에게 표준약관 사용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어디까지나 사용 권장을 할 뿐이므로, 결국 따를 것인지는 사업자의 자율에 달렸다. 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특전이나 압력이 필요한데, 이를 잘 설계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또한 표준약관은 사업자의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하므로(법률이 아니므로), 기업이 이를 무시하고 별도 약관을 둘 경우 소비자가 직접 그 불리함을 인지하기 전에는 제재가 어렵다.

두 번째 단점으로, 표준약관은 어디까지나 “표준” 일 뿐, 모든 상황을 세세히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즉, 일률적 조항으로 담기 어려운 서비스별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 이를 보완하려면 표준약관 자체를 여러 버전(포털용, 게임용 등)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표준약관에 유연성을 허용하는 문구(“본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사 정책에 따른다.”등)를 넣어야 한다. 결국 이 경우 자율규제 모델과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세 번째, 표준약관은 사전 예방적 효과는 크지만, 이미 발생한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직접 제공하지는 않는다. 즉, 표준약관이 있어도 기업이 이를 어기면 결국 소송 등 법적 절차가 필요하며, 표준약관 자체에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집행력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

다. 이해관계자 반응 및 실행 가능성

사업자 측에서는 표준약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 긍정적으로 보는 측은, 법률 규제보다 덜 부담되며 명확한 지침이 생기므로 좋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여러 사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 서비스마다 다른 규정을 둘 필요 없이 통일된 대응 기준을 마련할 수 있어 편리할 수 있다. 반면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은, 약관 내용이 고정되면 자사 서비스의 독자성을 살리기 어렵거나 위험부담이 커진다고 여길 수 있다. 또한 해외 본사가 정책을 결정하는 다국적 기업들은 한국 표준약관을 채택하는 문제에 본사의 승인을 받아야 할 텐데, 이를 번거로워할 가능성도 있다. 이용자 측이나 소비자단체는 표준약관에 대체로 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준약관은 기본적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 수단으로 도입되는 것이므로, 여론의 거부감이 적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하면 불공정조항이 걸러질 것이므로, 이용자 권리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볼 것이다. 다만 우려가 있다면, 강제가 아닌 권고에 그쳐 기업이 안 따르면 그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정부 측은 표준약관을 비교적 손쉽게 추진할 수 있고 입법을 대체하는 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긍정적일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에서도 소비자 보호 실적을 올릴 기회가 되며,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직접 규제기관으로 나서지 않아도 되어 부담을 덜 수 있다. 실행 가능성 면에서, 표준약관은 법률 제정보다 절차가 간편하므로 1~2년 내 제정도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권고로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다. 관건은 주요 사업자의 동참과 이행인데, 만약 대형 국내 사업자들이 선제적으로 표준약관을 받아들인다고 선언하면 외국계 기업들도 소비자 여론을 의식해 따를 가능성이 높다. 또한 표준약관 사용을 인증마크 부여 등과 연계하면 기업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바. 국내외 참고 사례와 적용 방안

국내에서 표준약관 제도가 성공적으로 활용된 예로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이 있다.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던 전자상거래 분야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약관을 만들어 권고하고, 거의 모든 쇼핑물이 이를 채택함으로써 거래 안정성이 높아졌다. 디지털 서비스와 관련하여 온라인게임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69호), 모바일게임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78호)도 각각 시행 중이다. 또한 모든 디지털 서비스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닝산업(이러닝산업법 제25조), 정보보호산업(정보보호산업법 제36조), 문화산업(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2조의2) 등에서 표준약관의 제·개정 및 권고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명시적으로 ‘표준약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약관에서 반드시 규정해야 할 사항을 법령에서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표준약관’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법률 조항도 존재한다. 예컨대 전기통신사업법의 경우, 앱마켓 사업자에게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권익 보고 사항’을 약관에 명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9, 동법 시행령 제30조의9 제1항), 이에 따라 과학기술 정보통신부가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을 고시하고 있다. 디지털 유산 분야에서도 위와 같은 선례를 따르는 방법을 고안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은 “디지털공화국법”을 따라 이용약관에 이용자의 사후 데이터 처리에 관한 선택권을 고지해야 하는데, 이는 약관을 통한 고지의무를 법제화한 사례로서 참고 가능하다.

④ 개별입법

가. 정의

개별입법 모델은 디지털 유산 상속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명문화하여, 모든 국민과 사업자가 따라야 할 법적 의무와 권리로 규율하는 접근이다. 개별입법은 디지털 유산을 다루는 최고 수위의 규범적 대응이라 할 수 있다.

나. 장단점

개별입법의 가장 큰 장점은 정책의 일관성있고 안정적인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범국가적으로 단일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민간자율 상에서 나타나는 개별 기업의 정책 편차나 임의해석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유산을 규율하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과의 상충을 입법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예컨대 새 법에서 “본 법에 따른 상속 절차는

개인정보보호법 제XXX조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와 같이 규정하면, 개인정보 제공 이슈가 법률 간 충돌 없이 처리된다. 세 번째 장점은 수법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제고된다는 점이다. 사업자와 이용자, 수탁자 모두 디지털 유산의 관리와 처리, 승계 과정에서 무엇이 가능하고 불가능한지를 사전에 알 수 있어 분쟁이 예방되고 법적 안정성이 높아진다.

반면 개별입법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며, 사회 변화에 대한 경직성과 해외사업자 집행 문제 등의 단점이 있다. 첫째, 새로운 법을 만들려면 국회 입법 과정이 필수인데, 사회적 합의 도출과 법안 심의에 긴 시간이 소요된다. 디지털 유산처럼 논점이 복잡한 사안을 법제화하려면 공청회, 관련 기관 협의, 위원회 심사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며, 그 사이 기술 상황이 변할 수도 있다. 둘째, 법은 한 번 제정하면 개정이 어려워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신속 대응하기에 곤란하다. 예컨대 법이 특정 유형의 서비스만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는데 이후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자산이 등장하면 법이 뒤쳐질 수 있다. 셋째, 해외사업자에 대한 집행력 부족 문제가 있다. 국내에서 법을 제정해도, 이를 준수해야 할 대상에 해외 플랫폼 기업들이 포함될 경우, 이들에 대해 강제력을 담보하기 어렵다. 우리 법이 미치는 범위는 국내 법인이나 국내 활동에 국한되므로, 해외에 서버를 둔 다국적 기업이 협조하지 않으면 소위 ‘갈라파고스 규제’가 될 위험이 존재한다. 즉 국내 기업만 지키고 해외기업은 실질적으로 안 지키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럴 때 오히려 국내 기업만 규제받아 역차별 우려도 제기된다. 넷째, 법으로 일률 규제하면 서비스 다양성 고려가 부족할 수 있다. 아무리 법을 정교하게 만들더라도, 개별 서비스들의 특성만큼 세세하게 규정하긴 어려워 획일적 규제가 될 소지가 있다. 이는 업계 혁신을 저해하거나 과도한 의무부과로 기업 부담을 높일 수 있다.

다. 이해관계자 반응 및 실행 가능성

이용자 측에서는 디지털 유산에 대한 권리가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개별입법에 대한 기대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새로운 법이 생기는 것을 추가 규제 부담으로 느끼겠지만, 법을 통해 디지털 유산의 관리에 있어서 지금까지 존재했던 불확실성이 해결된다는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측이나 입법부는 개별입법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지만, 법률안 내용 합의와 외부

반발 최소화라는 어려운 과제를 떠안게 된다. 정치적으로는 국민 호응을 얻기 쉬운 주제일 수 있으나, 기업 로비나 기술적 쟁점으로 표류할 위험도 있다.

실행 가능성 면에서, 개별입법은 네 가지 모델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확실성도 크다. 현재까지 국회에는 몇 차례 디지털 유산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되거나 논의 진전이 더딘 상황임을 앞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요구가 높아지면 추진 속도가 빨라질 여지는 있다. 만약 정책 입안자들의 의지가 강하고 이해관계자 조율이 원만히 된다면, 향후 2~3년 내 법 제정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다른 나라 입법례가 축적되고, 국내 자율 대응 경험이 쌓이면 논의의 성숙도가 높아져 입법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라. 법률 초안의 주요 구성요소

앞서 언급한 해외 입법례 및 그간 발의된 법안들을 종합해 볼 때 입법이 고려되어야 할 중요 사항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 목적 및 정의 조항: 디지털 유산의 범위를 정의하고, 법 제정의 목적(고인과 유족의 권익 균형 등)을 명시한다.
- 기본 규칙(default rule): 고인이 아무 지시 없이 사망한 경우 적용되는 원칙을 정한다. 예컨대 “고인의 계약상 지위 및 디지털 자산은 상속인에게 승계된다”처럼 기본 상속 인정 원칙을 두거나, 또는 “이용자가 사전에 정하지 않은 경우 디지털 유산은 상속인에게 접근 권한만 부여된다.” 등 여러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
- 이용자 사전 지정권 보장: 고인이 생전에 자신의 계정 처리 방법을 지정할 권리를 인정할지와 그 방식을 규정한다. 이를테면 각 서비스에서 “디지털 유산 관리자”를 지정하는 기능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화할지, 아니면 단순 권고할지 결정한다.
- 상속인(수탁자) 권리 범위: 상속인에게 어떤 권한을 줄지 구체화한다. 예를 들어 고인의 데이터 사본을 받을 권리, 계정 접속 권리, 계정 자체의 이전 등 각각 가능 여부를 정한다. 이때 통신비밀 등이 문제 되는 콘텐츠 열람 권한은 별도로 제한하거나 조건(법원 명령 등)을 붙일 수 있다.
- 공동상속 처리: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디지털 유산 처리를 어떻게 할지 규정한다.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재산이면 공유로 보지만, 서비스 이용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표

상속인 지정이나 법원 조정 절차 등을 둘 수 있다.

- 사업자의 의무와 면책: 서비스 제공자의 협조 의무(정당한 상속인 확인 시 자료 제공 등)와 면책조항을 함께 규정한다. 예를 들어 “사업자는 상속인에게 데이터를 제공할 때 고인의 통신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하며, 본 법에 따른 제공에 대해서는 계약상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또는 “사업자가 본 법 규정에 따라 선의로 조치했을 경우 그로 인한 책임을 면한다”라는 등의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 면책 규정은 기업들이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 절차 및 관할: 상속인이 신청할 절차(필요 서류, 절차 기간 등)와 분쟁 시 관할 법원이나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여부 등을 정한다. 미국 법안들은 주법으로 하다 보니 관할 문제를 주 법원으로 명시하고 있고, 우리는 전국 단위 법이므로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둘 수도 있고 별도의 분쟁조정기구를 둘 수도 있다.
- 벌칙: 사업자가 법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제재 수단을 들지도 고민할 수 있다. 예컨대 정당한 상속인 요구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식이다. 다만 과도한 처벌은 기업 반발을 살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상의 요소들은 국내외 사례와 지금까지 제기된 법안들을 종합하여 도출한 것으로, 실제 입법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조정될 것이다. 특히 기본 규칙과 이용자의사 우선권 부분은 법철학의 문제로서, 논쟁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즉 “원칙적으로 상속 인정, 예외적으로 금지”로 할지, 반대로 “원칙적으로 미승계, 이용자 동의가 있을 때만 승계”로 할지 결정해야 한다. RUFADAA의 경우 이용자 동의(사전 지정)가 최우선이며, 동의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해당 서비스의 약관에 따르도록 하면서도, 상속인은 일부 제한적 권한(콘텐츠가 아닌 메타데이터 접근 등)을 가질 수 있게 했다. 우리의 법도 완전히 새로 고민할 수도 있고, 이러한 모델법을 참고할 수도 있다.

마. 이해관계자 반응 및 예상 쟁점

개별입법 추진 시 예상되는 이해관계자 반응은 위 “나. 장단점”에서 논의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다. 여기서는 입법 과정에서 특히 쟁점화될 수 있는 주제들을 추가로 살펴본다. 디지털 자산의 재산적 가치 인정 여부: 게임 아이템, 전자지갑의 암호화폐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자산은 상속 대상으로 분류할지 논의가 필요하다. 대부분 긍정할 것이나, 일부에서는 게임사 약관에 따라 소유권이 회사에 있다고 주장할 수 있어, 법에서 이를 뒤집을지 쟁점이 될 수 있다.

- 개인통신 내용 접근: 고인의 이메일 본문, 메시지 등은 통신비밀 이슈로, 법에서 원칙적 금지 vs. 허용 여부를 놓고 논쟁이 예상된다. 한 방법으로 법원 영장이나 모든 당사자 동의 시에만 허용 같은 절충안도 검토될 수 있다.
- 미성년자 계정의 상속: 미성년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그 계정 상속은 친권자(부모 등)가 행사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특별 규정이 필요할지도 논의될 수 있다.
- 소멸성 콘텐츠 처리: 일정 기간 후 자동 삭제되거나 일회성으로 사라지는 콘텐츠(비밀 채팅, 스토리 등)는 상속 시점에 이미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를 법으로 어떻게 다룰지(예컨대 사업자의 보존 의무를 부과할지 말지)도 다뤄져야 한다.
- 국제 조항: 해외사업자에 대한 협력 의무 규정이나, 국제사법상 준거법 문제 등도 부수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외국 사업자라도 대한민국 거주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본 법을 준수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넣을 수 있지만 실효성 문제가 있다.
- 연명계정: 가족이 함께 쓰던 계정 등 특수 경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지 여부. 현실적으로 개인 단위로만 상정하지만, 과거 일부 서비스에서 가족공유 계정 등이 있었으므로 관련 분쟁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바. 국내외 사례 및 적용 방안

미국의 RUFADAA는 개별입법의 대표적 성공 사례다. 또한 프랑스는 개별 법률에 조항을 넣는 방식으로, “이용자는 온라인 플랫폼에 자신의 사망 시 데이터 처리에 관한 지시를 내릴 수 있으며, 사업자는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었다. 이는 강한 이용자 권리 보장 규범으로, 사업자들은 이용자에게 사전 지정 기능을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이상으로 살펴본 네 가지 정책 방안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단계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할 수도 있다. 예컨대 단기적으로는 현행 민간자율을 유지하되 협회 및 단체를 중심으로 자율규제 차원의 업계 표준을 만들고, 중기적으로 표준약관으로 확대·

정착시킨 뒤, 장기적으로 개별입법을 제정하는 로드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방식이든 디지털 유산 상속에 대한 기본 원칙을 확립하고, 고인과 유족,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환경을 마련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적·법적·사회적 관점의 통합적인 접근과 이해관계자 간의 섬세한 이익형량이 요구된다.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디지털 유산의 승계에 대한 국내외 현황과 쟁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법제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디지털 유산의 효과적인 승계를 위한 정책 모델을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우선 현행 법령상으로는 전통적인 상속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이 디지털 유산과 부분적으로 관계되지만, 통합적이고 명시적으로 디지털 유산을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것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제시한 정책 대안으로는 (1) 민간 자율에 맡기는 방안, (2) 가이드라인 등 자율규제 유도, (3) 정부 주도의 표준약관 제정 또는 행정지침, (4) 별도의 법률 제정(개별입법)의 네 가지가 있다. 각 대안에 대하여 정의와 구현 방식, 기존 제도와 연계성, 도입 시 장단점, 이해관계자들의 반응, 실현 가능성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자율적 대응이나 행정지침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초기에는 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되, 점진적으로 공적 규제 수준을 높여가는 단계적 접근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당장 입법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이용약관 권고나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통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단기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후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디지털 유산 관리에 관한 별도 법률을 제정하여 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방향이 제시되었다. 종합하면, 단기적으로는 가이드라인이나 표준약관 등의 수단으로 임시방편적 대응을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체계적인 개별 법률의 형태로 제도화하는 방향성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디지털 유산에 대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유산 관리와 승계에 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법률 내에서 승계 대상이 되는 디지털 정보를 특정하거나 유형을 어느 정도 적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용자 생전에 남긴 의사(유언 등)의 효력을 법적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사업자의 역할 및 책임 범위를 명시하여 이들이 법의 틀 안에서 안심하고 협조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과도한 법적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이용자의 합법적인 요청을 이행한 사업자는 책임을 면제받는 조항 등을 두어야 한다.

셋째, 사업자가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할 최소 기준은 법이나 지침으로 제시하되, 서비스 유형별 특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규율 방식이 요구된다. 핵심 원칙(예: 이용자 사전동의 절차, 인증 방법 등)은 공통으로 정하고 세부 운영은 각 사업자가 자신의 서비스 특성과 이용자와의 계약 성격에 따라 변주할 여지를 두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상기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디지털 유산의 승계를 위한 입법 초안을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디지털 유산 승계를 위한 입법초안〉

제44조의11(계정대리인의 지정)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가 자신의 사망 또는 실종에 대비하여 자신의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대리인(이하 “계정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계정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계정대리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정대리인은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2항에 따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계정대리인의 본인 확인 등 이용약관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디지털 유산의 관리와 승계를 위해 초기에는 민간 자율에 기반한 유연한 접근으로 시작하되 궁극적으로는 별도 법률을 통한 제도화로 나아가야 함을 제언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 사망 이후 남겨지는 방대한 디지털 정보가 상속 법체계 내에서 질서 있게 처리되고, 이용자의 사생활 비밀이 존중되며, 사업자의 예측 가능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제5장 정부정책 반영현황

본 연구는 2025년도에 발의된 세 건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046, 2209252, 2209604)의 방송통신위원회 검토의견 작성에 참고자료로 사용되었다. 세 발의안은 공통적으로 디지털 유산의 승계 및 관리에 관한 제도의 미비와 디지털 유산의 특수성으로 인해 기존 상속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현황을 지적하며, 정보통신망법 내 법령 신설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식별한 디지털 유산 승계 및 관리 제도의 핵심 항목(디지털 유산의 정의 및 범위, 수탁자의 지정방식 및 권한, 기존 법률과의 충돌여부, 이용자의 생전 의사 표명 권한 보장 여부, 사업자의 역할)과 주요국 입법례와 단계별 입법안 분석은 위 세 발의안에 대한 검토에 활용되었다.

의안번호 2208046(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안, 2025.2.11.)는 이용자가 사전에 자신의 디지털 정보의 제공 거부 의사를 거부하지 않았다면 민법상 상속인에게 사망 및 실종신고시에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이용자 및 제3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가능성을 지적했다. 또한, 수탁자를 민법상 상속인으로 특정하였는데, 이용자의 수탁자 별도 지정 가능성을 배제하는 측면을 우려하였으며, 자산성이 없는 디지털 유산에도 상속법리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을 주지하였다.

의안번호 2209252(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안, 2025.3.21.)는 사업자에게 민법상 상속인의 요청시 사망한 이용자의 디지털 유산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이용자가 사전에 디지털 유산 처리 방식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하며,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의 상속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본 법안에 대해서는 위 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안과 동일한 검토의견이 제시되었다. 한편, 이용자의 사전 의사결정 가능성을 고려하고 이를 우선 적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차이점이 있다.

의안번호 2209604(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안, 2025.4.7.)는 ‘계정대리인’ 개념을 도입하여, 기존 민법상 상속인에 한정하여 디지털 유산 접근 권한을 논의하였던 앞선 두 법안과

차이점이 있다. 또한 본 법안을 준수해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를 특정함과 동시에, 이들에게 계정대리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등 구체적 사항을 미리 정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더하여 계정대리인의 요청시 계정 접근도 허용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본 법안의 수범자가 정보통신망법이 규율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기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승계 가능한 디지털 정보의 유형의 명시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한편, 이용자의 사전 대리인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과 디지털 유산의 승계 과정에서 사업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었다.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게임동아(2024. 6. 13.), “게임은 유산이 될 수 있을까?”, <https://game.donga.com/112559/>

김기중(2010), “사자(死者)의 ‘디지털 유품’의 법률문제”, KISO저널, 제3호.

김현수 외(2011), “디지털 유산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네이버, ‘디지털 유산 관련 정책’,

https://privacy.naver.com/policy_and_law/digital_heritage?menu=policy_service_manage_digital_heritage.

신영수(2008), “표준약관제도에 관한 경쟁법적 고찰”, 경제법연구 제7권 제1호.

업비트, ‘상속 업무 처리 정책’, https://static.upbit.com/guide/inheritance_policy.pdf.

엔씨소프트, “사망자 계정의 명의 이전을 위한 계정(ID) 명의변경 동의서는 무엇인가요?”,

<https://help.plaync.com/faq/search?faqNo=2708>.

유인호(2015), “디지털 시대의 상속권과 잊혀질 권리”, 국제법무, 제7집 제1호.

유성함(2023), “중국에서의 가상자산 상속에 관한 법적 고찰”, 중국법연구, 제53집.

윤주희(2011), “디지털유품의 상속성에 관한 민사법적 고찰”, 법학연구 제14집 제1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이강호 · 이해원(2020), “개인정보보호와 자율규제”, 법조 제69권 제6호.

이코리아(2024. 11 .12.), “글로벌 게이머 ‘디지털 콘텐츠 소유권’ 논쟁 확산... 국내는?”,

<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382>.

이해원(2022),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의 사법적(私法的) 의의 및 개선 방안”, 법제 제699호.

_____(2024), “데이터 상속”. 가족법연구, 제38권 제2호.

_____(2025), “디지털 유산 법제 마련을 위한 방향성 제안”.

채향석(2017),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 고려법학 제85호.

최경진(2011), “디지털유산의 법적 고찰- 온라인유산의 상속을 중심으로”, 경희법학 제46권

제3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최경진(2013), “디지털 유산 입법화 과정의 쟁점”, KISO저널, 제11호.

카카오, ‘고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https://privacy.kakao.com/policy?lang=ko#digitalHeritage>.

한경(2025. 1. 9.), “삼성·애플·카카오, 무안 제주항공 사고 유족에 희생자 지인 정보 제공”,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1096363g>.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2022), “한국의 갈라파고스 규제(I)”, 이슈페이퍼 제22-05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https://www.kiso.or.kr/>.

해외 문헌

Apple Support, ‘Apple 계정의 유산 관리자를 추가하는 방법’,

<https://support.apple.com/ko-kr/102631>.

Apple Support, ‘사망한 가족 구성원의 Apple 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을 요청하는 방법’,

<https://support.apple.com/ko-kr/102431>.

ERLEY-ROBERTSON, HILL & MCDUGALL LLP(2022. 11. 10.), “What Will Happen to Your Digital Assets Upon Your Death or Incapacity?”,

<https://perlaw.ca/2022/11/10/what-will-happen-to-your-digital-assets-upon-your-death-or-incapacity/>.

Google Support, ‘About Inactive Account Manager’,

<https://support.google.com/accounts/answer/3036546?hl=en>.

Instagram, ‘Instagram에서 고인의 계정 신고하기’,

<https://help.instagram.com/264154560391256>.

Legifrance, <https://www.legifrance.gouv.fr/loda/id/JORFTEXT000033202746/>.

Meta, ‘Adding a Legacy Contact’,

<https://about.fb.com/news/2015/02/adding-a-legacy-contact/>.

NCAC(2024. 11.), “Prepare your digital legacy plan so that your family will not be

bothered by your contracts hidden in your smartphone”,

https://www.kokusen.go.jp/e-hello/news/data/n-20241120_1.html.

Prince Edward Island, 「Access to Digital Assets Act」.

Register(2024. 11. 21.), “Put your usernames and passwords in your will, advises Japan’s government”, https://www.theregister.com/2024/11/21/japan_digital_end_of_life/.

Schlunn & Elseven, “Digital Estate in Germany: Social Media & Bitcoin / Cryptocurrencies
! German Inheritance Law”,

<https://se-legal.de/digital-estate-in-germany-social-media-bitcoin-cryptocurrencies-german-inheritance-law/?lang=en>.

Uniform Law Commission, www.uniformlaws.org/.

X, ‘How to contact X about a deceased family member’s account’,

<https://help.x.com/en/rules-and-policies/contact-x-about-a-deceased-family-members-account>.

● 저 자 소 개 ●

김 현 수

- 고려대학교 법학 박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 선 희

-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 박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장 신 재

- Rice University 경제학 박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 경 남

- 고려대학교 경영학 석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방송통신정책연구 RS-2024-00488524

디지털 유산에 관한 논의 동향 및
중장기 정책방향 연구

(A Study on Mid-to Long-term Policy
Measures on Digital Legacy)

2025년 3월 일 인쇄

2025년 3월 일 발행

발행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발행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Homepage: www.msit.go.kr

인쇄 인성문화